

program / 프로그램

Time	program 프로그램
13:50 – 14:00 (10')	Registration 등록
14:00 – 14:10 (10')	토론취지 및 주제 설명
14:10 – 15:40 (90')	1 session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Speakers 발표 코로나19와 울산교육현황과 과제 - 우영주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표 코로나19와 지방정부의 이주민정책 -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와 장애인 돌봄정책의 현황 - 이해경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 노동과 과제 - 김정아 민주노총 정책국장 코로나19 울산지역 언론보도 현황과 평가 - 이기암 울산저널 기자 지구의 역습, 코로나19와 기후위기 -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코로나19와 위기의 사회복지 -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이사 코로나19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의 현실과대안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울산시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15:40 – 16:00 (20')	휴 식
16:00 – 17:00 (20')	종합토론 [좌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각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 각 분야별 시민사회 우선과제 제시 - 울산시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 시민사회 활동방안 논의
17:00 - 18:00 (60')	휴 식 및 간단한 식사

program / 프로그램

Time	program 프로그램
18:00 – 18:10 (10')	토론취지 및 주제 설명
18:10 – 19:20 (70')	2 session 지역사회 인권보장 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Speakers 발표 [제주지역] - 제주지역 인권보장 체계 -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와 지역사회 협력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 [대구지역] - 대구·경북지역 인권행정 추진 현황과 인권제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전북지역] - 전북지역 인권보장체계 현황과 문제점 -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 [충청지역] - 충청지역 인권조례 폐지운동 현황과 인권운동진영의 대응 사례 /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광주전남] - 광주지역 인권보장체계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사례와 인권마을만들기 / 광주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대표 [경기지역] - 경기도 시도별 인권센터 현황과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 운영사례 /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울산지역] - 울산형 인권옹호관제도의 실험 -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위원제도의 도입 /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윤경일 연구원
19:20 – 19:30 (10')	휴 식
19:30 – 20:30 (60')	종합토론 [좌장] 오문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각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 논의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20 울산인권운동연대
2000-2020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1. 혐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

2020.8.21. 금 오후 02:00-05:00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3층 강당 (동구 현대백화점 옆)

문의 052-242-1119 접수 bit.ly/covid19_ulsan



분야별·주제별 발표

[교육] 코로나19와 울산교육현황과 과제

우영주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표

[이주민] 코로나19와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장애] 코로나19와 장애인 돌봄정책의 현황

이해경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여성] 독박육아, 일자리 등 일상을 파고드는 재난시기 여성인권

김연경 울산여성회

[노동]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 노동 현황 등

김정아 민주노총 정책국장

[언론] 코로나19 울산지역 언론보도현황과 평가

이기암 울산저널 기자

[환경] 지구의 역습,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복지] 코로나19와 위기의 사회복지

이승진 (사)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건강권] 코로나19와 울산지역 공공의료의 현실과 대안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참정권] 울산시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종합토론

[좌장]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

[토론] 각 분야별 시민사회 과제 제시 및 울산시 재난정책 제시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로나19와 울산교육현황과 과제

우 영 주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예상된다. 한시도 마스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교육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와 말도 하지 못하고 급식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먹어야 한다.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등교를 결정하였다. 오로지 등교 수업의 이유는 대학입시이다.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도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함에도 수능은 시행해야 되고 수능을 치기 위해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는 교육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지식 중심의 학력에서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교사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교육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면 관계 맺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삶과 분리된 교육시스템에서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 방안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및 돌봄 체제 구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밑으로 부터의 교육 혁신 운동이 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는 주동력으로까지 성장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비롯한 학교와 지역의 결합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 근래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제도와 비제도 교육의 고리 역할을 하여 삶 속에 스며드는 교육시스템을 창출하는 모델이 나오기도 한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 측면에서 울산광역시에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울산광역시 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갈 담당부서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평생교육국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를 두고 있으며 교육정책과에는 교육정책팀, 방과후 활동지원팀, 교육시설지원팀, 학교안전지원팀, 인재양성지원팀이 있다. 그리고 교육협력관, 교육협력팀을 두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국과 과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앞서 나가는 타시도의 정책을 살펴보고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마을과 학교가 새로운 눈높이로 협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생태환경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이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하기 좋은 예이다.

전국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이다.

① 서울시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교육정책과 - 교육정책팀, 방과후 활동지원팀, 교육시설지원팀, 학교안전지원팀, 인재양성지원팀, 교육협력관, 교육협력팀

② 경기도 : 평생교육국과 - 교육협력과

③ 강원도 : 교육법무과 - 대학협력팀, 교육지원팀

2019~20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

<전국 혁신교육지구 현황>

지역	명칭	운영 개수	지정현황
서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5지구(25구) 2015 :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 종로구 2016 :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2017 : 서초구, 용산구 2019 :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2015(8), 2016(12), 2017(2) 2019(3)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7지구(16구군) 2018 : 북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2019 : 부산진구, 연제구	2018(5) 2019(2)
인천	교육혁신지구	6지구(10구군) 2015 : 남구 2017 : 부평구, 계양구, 중구 2019 : 미추홀구, 연수구	2015(1) 2017(3) 2019(2)
경기	혁신교육지구	27지구(31시군) 2011: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2016: 부천, 안산, 군포, 화성 2017: 성남, 의왕, 고양, 안성, 여주, 동두천 2018: 양주, 포천, 김포, 과천, 양평, 가평, 광주 용인, 수원, 이천, 평택	2011(6) 2016(4) 2017(6) 2018(11)
강원	행복교육지구	12지구(18시군) 2015 : 태백, 화천 2017 : 원주, 영월, 정선, 철원, 인제 2019 :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양구	2015(2) 2017(5) 2019(5)
충북	행복교육지구	11지구(11시군) 2017 :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증평, 음성 2018 : 청주, 영동, 단양	2017(8) 2018(3)
충남	행복교육지구	12지구(15시군) 2017 :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공주 2018 : 홍성, 천안, 예산 2019 : 보령, 서산	2017(7) 2018(3) 2019(2)
전북	혁신교육특구	6지구(14시군) 2015 : 전주, 정읍, 남원, 완주 2016 : 익산 2019 : 군산	2015(4) 2016(1) 2019(1)
전남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19지구(22시군) 2013 : 장흥 2014 : 장성, 영광 2015 : 함평, 영암, 강진, 고흥, 곡성, 나주 2016 : 무안, 해남, 화순, 담양, 광양, 여수 2018 : 보성, 순천, 신안, 진도	2013(1), 2014(2), 2015(6), 2016(6) 2018(4)
경남	행복교육지구	8지구(18시군) 2016 : 김해 2017 : 밀양, 양산, 남해 2019 : 진주, 사천, 고성, 하동	2016(1) 2017(3) 2019(4)
세종 대전 울산	혁신교육지구	2016 : 세종 2018 : 대전 대덕구 2019 : 울산 중구, 남구	2016(1) 2018(1) 2019(2)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늘여야 한다. 현재 전국 꼴찌 수준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 정보화, 지역 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 예산 규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단체장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 규모이고 서울, 강원 순으로 많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적다. 또,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이고 울산은 학생 1인당 76,295원이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울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도 매우 낮지만 비법정이전수입(법령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재량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함. 학교급식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도서관의 설립·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이 포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비법정 이전 수입은 경북 다음으로 울산이 적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광역시자치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계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광역시자치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원)
계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표 II-29 | 시·도교육청별 비법정이전수입 세입본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본예산총액	739,014	100,847	46,059	34,212	42,022	22,373	22,397	17,646	7,878
비법정 이전수입	13,954	369	977	697	1,580	723	750	296	304
구성비	1.9	0.4	2.1	2.0	3.8	3.2	3.3	1.7	3.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예산총액	164,650	30,786	27,242	36,143	35,351	38,734	45,761	54,850	12,061
비법정 이전수입	2,620	598	680	776	798	928	81	1,412	365
구성비	1.6	1.9	2.5	2.1	2.3	2.4	0.2	2.6	3.0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방식이 상이(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하거나 학교로 직접 지원)하므로 규모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단순 비교 곤란

<출처 : 교육부>

셋째, 친환경급식비 지원을 늘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이제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코로나 19도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친환경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친환경 재배 농가가 줄어들어 지역에서 수급하지 못하면 타 지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친환경 식재료 가지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학교 급식 뿐 아니라 공공급식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늘려 친환경 농가를 울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짐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울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타 시도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 현황>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③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국민식생활 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⑦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⑩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⑪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코로나시대, 이주민의 현실과 요구

김 현 주

(울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자체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리는 사업장에 이주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아시아 16개 나라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듯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전제로 한 제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난민, 유학생, 결혼이주민, 미등록 체류 이주민 등 많은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 뿐 아니라 법·제도의 각종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원래도 심각했던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구조적 인종차별이 코로나 시기에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재난시기에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더욱 더 심각해진 것이다.

1) 공적마스크와 재난정보 소외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개인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3월 6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실시했다.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한 기본 전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 이것은 이주민들의 절반은 아예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현재 230만 여명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중 173만 여명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이며, 전체 이주민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5만 여명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1일자로 유학생, 연수생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체류 이주민들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유학생, 연수생, 6개월이 안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체를 할 수 없는 이주민, 미등록 체류 이주민 등 전체 이주민 중 절반은 아예 공적마스크 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자, 4월 20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학생과 일부 이주민만 공적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등록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비자의 이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민 등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실효가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부 당국이 모를 리 없다.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마저 차별하냐”는 인도주의적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커지자, 이를 의식한 형식적 조치라 생각된다.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듯 공공성을 강조한 마스크 수급 정책에서 ‘한국인 먼저’라는 암묵적 카르텔로 이주민들은 속절없이 밀려 났다. 이렇게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정책이 종료되었다.

초기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울산시와 일부 지자체 등에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기도 했다. 이 경우 배부의 기준은 주민등록이었고, 이주민들은 역시 배제되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울산시와 지자체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 단체 등을 통해 얼마간의 마스크, 소독제 등을 배부하기도 했다. 뒤늦은 생색내기는 방역을 위한 선제적 대응, 재난 상황에서 주민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방역과도 거리가 멀다. 지자체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주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빈틈없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방역 대처가 되자, 뒤늦게라도 이주민을 돌아보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마저 속절없이 방치된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 즉 구멍임을 인식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면서도 한편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이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민간의 기부에 의존해 이주민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영리기구인 적십자사조차 “어르신,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난 후라 이주민들에게 너무 늦었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시스템에서, 지자체의 방역 지원정책에서 뿐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는 재난 정보로부터의 소외 역시 일상에서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한글이다. 각종 정보의 다국어 제공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확진자 발생현황, 동선, 방역대책 세부지침, 피해 지원정책 등 관련 광범위한 정보를 이주민들이 정확히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없다. 예방수칙, 자가 격리 수칙 등이 다국어로 제공된 정도이고, 그나마 이조차 몇 개 나라언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주단체들이 나서 추가 번역해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보의 소외는 자칫 생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주민들이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핵심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소외계층 이주민의 의료지원 공백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이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간

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즉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정 의료기관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울산지역은 2017년까지 전국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시행기관이 없는 곳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18년 울산시에서 시행의료기관을 지정하긴 했으나, 예산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운영과는 동떨어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울산시가 타 광역시도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과 비교해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은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코로나19시기에 공공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지원기관을 찾아야 하는 이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커졌다. 역설적이게도 울산은 아예 공공병원이 없는 관계로 이런 어려움조차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즉 울산의 이주민은 공적 시스템을 통한 소외계층 의료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동안 울산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의료지원 시스템은 보건소를 통한 미등록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과 이주민 결핵치료 지원뿐이었다. 미등록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였고, 결핵치료 지원은 내국인과 지역사회 감염우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업무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2월 24일부터 중단되었다. 언제 다시 이 업무를 개시할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비교적 매우 작은 공공의료 혜택일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의료지원임을 상기해야 한다. 내국인의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보건소 뿐 아니라 병원에서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이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근에 지정병원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진료 및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은 다른 곳에서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외계층 이주민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보건소에서 제공되던 기초적인 공공의료 사업마저 중단되었다. 코로나19속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 생존을 위한 기본 인권조차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3) 재난지원금 등 지원정책 차별

울산시의 경우, 울산시민들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재난지원금을 함께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중앙정부는 애초에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했다.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4월 16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세 부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장기체류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을 배제하는 것이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제도적 차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

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 4월 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4월 말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긴급군민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군민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이주민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울주군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소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과정에서는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울주군은 이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울주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6월에 결혼 이민자 등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부천시와 안산시 등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는 모든 등록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울산지역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과는 매우 비교되는 모습으로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등록이주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이주민(재외동포 포함)은 3월말 기준으로 26,689명이다.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면 약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울산시 전체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은 2.5% 정도다. 전국비율 4.5%와 타 광역시도 규모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편이다.

즉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주민들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주민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 이주민 현황 (2020.03.31.기준)]

	유학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재외동포	그 외	계
울산시	1,320	4,744	2,396	2,858	2,713	6,627	6,031	26,689
동구	156	867	305	470	234	841	1,462	4,335
남구	778	262	740	663	863	1,804	1,636	6,746
중구	23	43	376	511	424	882	681	2,940
북구	4	873	287	546	142	472	641	2,965
울주군	359	2,699	688	663	1055	2,628	1,611	9,703

재난지원금 외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정책들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를 제외한 이주노동자들에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국민’만 기본대상이 되고, 이주노동자는 사회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있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수혜를 기대하는 구조다.

한편 정부와 타 지자체와는 달리 울산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하지만, 사업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서에 싸인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외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정책]

지원정책	지원대상 및 내용	해당 여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90%까지 지원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해당없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울산시, 고용노동부, (재)울산일자리재단)	50인 미만 사업장, 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저소득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훈련생 휴일일수 ×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울산페이로 지급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도 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총 150만원 지자체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추가지원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해당없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인종, 국적,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이러스는 평등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 같은 바이러스라 해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더욱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사회의 인종차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그 민낯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났듯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조차 이주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며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섬세하게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해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해 경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중국의 우환으로부터 날아 들어온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단어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정확한 대응방법도 예방책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료약이 없다는 공포까지 다가오니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이웃을 경계하는 사회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혹여 감염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마주하는 것에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 혐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재난이나 위기 그리고 감염병으로 사회적 혼란이 있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그들의 삶은 차별과 기피의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계의 활발한 활동으로 2000년 후반부터 여러 가지 법과 지원책들이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보면서 재난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새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 또한 장애인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각 영역의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촘촘히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감수성 또한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대피를 못해 갇혀 있었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한 장애인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느꼈던 공포와 위험의 노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과 위기 시에 장애인에 대한 안전 매뉴얼과 지원정책의 부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공포의 정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모든 매뉴얼이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마련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도 교육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어느 발표 내용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으며, 비장애 학생들의 기준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내용들로 발표되고 시행이 되다보니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 교육의 대상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촘촘히 마련하여 어느 누구도 공교육 내에

서 불편함이나 불평등함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스 바이러스에서는 재난 취약계층 인식조차 없었으며,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는 장애인 지원대책으로 일부에 마스크와 소독약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장애계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교육, 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의 추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과제의 수행 계획을 포함 하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중에 또다시 코로나 19가 터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2015년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장애를 고려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의 상황은 어떠한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모든 상황을 대변하여 진행을 하였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장애마다 겪는 어려움이 다름에도 일괄적인 공문으로 일처리가 이어졌다. 코로나19의 전국단위로 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게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일자리, 특수학교 등 전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기관 업무를 일부 운영 혹은 잠정중단에 놓인 상태이고, 이 기관을 이용하던 장애인 역시 줄어든 외출과 변화된 일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상황의 위급성만을 강조하며 당사자들에게 서비스의 중단을 알리고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관한 내용은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공문으로 기관에 내려지고 기관들이 지침에 맞춰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였다. 장애당사자들과 이용자들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달식의 지침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대처이다.

계획되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서비스는 중단이 되었고 돌봄의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맡겨졌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보니 돌봄의 공백이 크게 다가왔으며, 그 모든 것을 가족이 감당해야만 하였다. 급기야는 제주와 광주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용하던 이용시설의 중단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보니 생업을 중단하거나 경제적 위기와 돌봄의 스트레스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다. 유일하게 지원이 되는 서비스가 활동지원서비스였으나, 그나마도 이용시설 서비스의 중단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지원사들을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들이 속출하였으며, 여러 가지 발생한 어려움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록 민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신속하게 민-관-공이 함께 간담회를 진

행하였다. 돌봄의 필요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단체를 비롯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울산시 등과 함께 진행하여 울산의 돌봄의 공백과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민과 공공에서 운영하는 중단된 돌봄 기관의 서비스를 긴급 돌봄의 형태로 진행 할 것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울산시의 협조를 받아 모금회 사업으로 신속하게 활동지원시간 추가와 생활키트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12곳에 ‘선별진료소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판’을 배포하고 안내하여 울산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돕고자 진행하였다.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다. 아쉬운 것은 초기에 공공에서 먼저 주도하여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으며, 지원의 내용이 한시적이고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재난은 훨씬 가혹하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재난이 경제적 상황과 처한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무게와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 가구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촘촘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기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에 맞는 촘촘한 매뉴얼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하달방식이 아닌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1. 재난과 위기발생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보 제공 접근 권 보장
2. 감염병 확산 시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3. 장애인 상황에 맞는 마스크 공급 및 방역지원
4.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5.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지정 등 사업과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 노동 현안 등

김 정 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임금) 삶의 원천인 소득을 감소시키고, 한계 기업 발생 등 고용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다. 기존 경제 하강국면과 산업 전환기로 인한 세계적 일자리 축소 영향 등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이 중첩되는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붕괴가 심각하다.

1.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 사회 비정규노동의 현실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특수고용, 하청·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 아래로부터의 위기.

[울산지역도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무급휴가, 무급휴직, 해고 발생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월 휴업조치로 무임금 상황 발생하여, 교육청과 협의 진행.
- 호텔 숙박업의 경우 무급 휴가 진행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주문량 확대를 감당할만한 시스템 미비로 배송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장 노동. 특수고용노동자라 연장수당은 없고, 배송지연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노동강도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 일반직원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지만 복구시설공단 체육 강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무임금 상황 발생.
- 플랜트 건설노조 코로나19로 건설공사 중단, 무임금 상황 발생
- 늘푸른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해고.
- 보건의료 노동자와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 (대략 울산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수 68,365개 종사자수 121,220명 상당. 2017년 자료)

-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4대보험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집중.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이 전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유지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차별받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택배·물류·배송, 콜센터,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 때문

- 지난 5월 부천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69명 발생. 3,7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97.3%로 (계약직 984명 26.8%, 일용직 2,588명 70.5%)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용직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쉬지 못함. 질병관리본부가 말하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라’는 생활방역 수칙은 비정규직에게 먼 나라 이야기. 에이스손해보험 구로구 콜센터 등. 상병수당 도입 필요. (상병수당?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

2. 울산지역 고용현황 갈수록 나빠져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초기에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점차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생산직과 사무직,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7월 현재 울산 지역 고용률은 57.7%. 지난해 같은 달보다 2%p 줄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인 15위를 기록.

- 취업자 수도 올해 1월 57만 명 선이 무너진 뒤부터 감소세를 이어 가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실업률은 5.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p 늘었고, 실업자 수는 3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가까이 늘어남.

-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사나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인구가 다소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일 수 있음.

- 실제로 연령대별 실업률을 보면 첫 일자리를 구하는 15살에서 29살의 실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음. 60살 이상의 실업률은 4.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 등에서 단시간 공공근로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

-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크게 늘고, 일자리도 단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

-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시간근로자는 32.6%나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10.3% 줄어듦.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고 몇 달 일하고 마는 데 그친다는 것임.

3. 점점 더 악화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확산.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던 일을 떼어내어 하청·외주화하는 방법이 일상화.

- 하청·외주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기업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고용관계는 하청·외주기업과 맺게 되고, 노동자들은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가 되어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음.

- 특수고용은 외주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불리면서, 노동자인 이들을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에서 전적으로 배제.

- 최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프리랜서까지는 인적 관계가 있었지만 플랫폼노동은 ‘앱’으로 마지막 남은 인적 고리마저 차단. 비정규 노동은 기간제(원청 직접고용)→간접고용(협력업체 외주)→특수고용(개인 외주)→프리랜서(개인 위탁관계)→플랫폼노동(인적관계마저 차단)으로 위계화되면서 점점 더 불안정화가 심화됨.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양태도 심각해질 것.

-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등 산업의 변화로 전 세계 일자리 감소와 이미 한국은 자동화를 세계 1위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후 자동차 산업으로 제조업 고용규모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상황. 서비스업도 무인계산기 도입 등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

4. 늘어나는 한계기업과 해고 앞에선 노동자

- 대우버스 공장 폐쇄 선언 및 일방적 해고 통보 (코로나19와 별개 사안)

: 600명의 자일대우상용차(주) 해고. 일방적 회사의 공장 폐쇄 선언, 살인 행위. 7월 이후 버스 생산 중단

- : 국내 버스 산업 내수판매 40% 차지. 울산시 진입도로 행정지원 받았지만 공장 폐쇄
- : 계약직 노동자부터 해고. 80여명에 이름.
- : 5월 18일부터 천막농성 진행 중.

- 고강알루미늄 희망퇴직 통보, 법정관리 상황

5. 지방정부의 대책 및 대안

- 임금노동자 감소는 대부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고용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높아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높여야 함.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계속 시도되는 노동권 개악 시도를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 필요. 전태일 3법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11조 삭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해고 없는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행정 지원과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
-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실태 파악이 우선 중요. 노동자권리보호 증진 조례에 따라, 지역 노동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세부 과제와 장기적 과제 도출이 필요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기술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그동안 지역 수준에서 전개된 산업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일자리 축소와 연동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산업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함.
-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국가 확장, 기본소득제 등 다양한 정책 제시를 위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도 자기 담론과 정책 마련 중요.

코로나19 울산지역 언론보도 현황과 평가

이 기 암
(울산저널 기자)

들어가며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 ‘울산지역 언론보도 현황과 평가’인데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처음엔 고사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 프레스센터에 수시로 출입하는 현직기자가 울산지역 언론 현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도 쉽게 얘기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취재를 다니면서 저의 관점대로 보여진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주관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언론비평가나 전문 언론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와 언론비평가는 분명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또한 울산에 2년밖에 안 된 현직 기자인 제가 나가서 얘기해야 할 정도면 ‘울산에 제대로 된 언론비평가가 이렇게 없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근 2년 가까이 지내본 결과,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10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련 여러 전문가가 함께 출연해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울산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지요.

여튼, 이 주제와 관련해 재차 참석 요구가 와서 나가게 됐지만, 주제내용인 울산지역 언론보도 현황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요즘 언론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울산지역 언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차후 전문적인 언론비평가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저는 지역 언론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Part 1. 이 시대의 언론. 메이저 언론이 아닌 이상 더 이상 값이 아니다.

- 중소형 지역 언론의 경쟁력은 매년 약화돼
- 신문사들은 교정, 교열 보는 부서들 폐지하는 추세
- 취재 시 방문하면 무엇을 취재하는지 보다 어느 언론사인지를부터..
- 능력 있는 기자들은 메이저 언론사로 가는 것이 목적
- 과거엔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젠 개인 sns, 유튜브 등에 더 관심

중소형 지역 언론의 경쟁력은 매년 약화돼

언론을 값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언론은 값의 위치였다고 봐도 무방.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지역언론의 위기가 찾아왔고 언론사의 과포화는 이제 더 이상 옛말이 아님. 인구 25만 명의 거제시만 해도 인터넷 신문 포함 총 50개 이상의 언론사가 존재(중앙언론의 주재기자 포함). 울산의 경우 작년(2019년) 기준 119 상황실의 기자 단톡방에만 100명 이상 기자가 있음. 2016년에는 이미 경기도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의 숫자가 300개 넘어서. 국회에 출입하는 언론사수가 국회의원 숫자보다 많아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

언론사가 많아진 것은 1987년 민주화이후 언론사 설립의 자유화와 2000년 IT붐 이후 인터넷 언론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났기 때문. 심지어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해 있는 이상한 이름의 언론도 생겼는데 시청에 출입기자로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갈등도 있었다는 후문.

중앙 언론도 지역언론보다는 괜찮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서울의 메이저 신문사들도 자사의 건물 임대수익으로 그나마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안 되는 신문사들은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언론사가 많아지면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해져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음. 반면 언론사 숫자가 많아지며 생존 경쟁을 위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을 요구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아. 더욱이 언론사 사주들의 경우 다른 기업을 경영하면서 겸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에 언론의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침해받음. 장사를 하면서 언론을 방패막이로 삼는 경우가 있음. 울산의 경우도 작년 언론사가 하나 만들어졌다가 1년도 채 안 돼 사라짐.

신문사들은 교정, 교열 보는 부서들 폐지하는 추세

전통이 있는 경남의 유력 일간지는 이미 교정이나 교열을 보는 부서 자체를 폐지. 또한 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지, 가짜뉴스인지 아닌 지를 판별하는 부서도 폐지해버렸다고 함. 즉, 이젠

기자가 기사를 쓰고 교열도 대부분 봐야 하며 타 기사를 참고할 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 경영난으로 인해 이렇게 교열 부서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신문사들이 많아져.

취재 시 방문하면 무엇을 취재하는지 보다 어느 언론사인지를부터

취재하러 가면 보통 어느 언론사인지를부터 물음. 무엇을 취재하러 왔는 지보다 어느 언론사인지가 중요한 것. (이는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비슷. 즉,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 이때부터 기자가 어떤 질문은 하느냐에 따라 해당기관의 선입관이 사라질 수도 있음. 그래서 능력 있는 기자들은 대부분 더 큰 언론사로 가는 것이 목적.

능력 있는 기자들은 메이저 언론사로 가는 것이 목적

지역신문의 경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도 보통은 2년 정도 후 이직하는 경우 많아. 2년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이슈라던가 문제점 등을 대부분 알았기 때문에 기자생활이 무미건조해 질 시기. 그래서 이런 정체돼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신문기자의 경우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보통 지역에서 중앙으로, 소형에서 중대형 언론사로 가는 경우 많아. 또한 신문기자가 방송기자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아. 스카웃 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함.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능력이 되면 자꾸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언론사들은 힘들어..

과거엔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젠 개인 sns, 유튜브 등에 더 관심

이젠 굳이 개인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없어졌음. 개인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는데 굳이 제 3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sns에 글을 올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삭제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데 굳이 언론을 통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짐.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의 세계인 단톡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 대부분의 중요한 대화들은 단톡방에서 이뤄지고 그 단톡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인싸(‘인사이드’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에 섞이지 못하는 부류가 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될수록 계층 간 접촉 점점 사라져

1) 앞으로 미래시대는 점점 더 계층간의 관계폭이 좁아질 전망

여기서 계층이란 사회 각 분야의 계층보다는 세대 간의 계층의 교류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뜻. 실

제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에 접어드는 세대들과 어울리지 못함. 한 예로 제가 이제 막 40인데 젊은 기자(20대초~30대초중반)들과 같이 연수받는 것조차 제한돼 있음.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여러 세대들이 어울릴 수 있을만한 공간이 별로 없음.

2) 젊은 세대들은 이미 기성세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고착화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소위 말하는 꼰대(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말. 여기서 더 확장돼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문화 탓이기도 함.

Part 2.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 기사를 거의 공짜로 받아먹는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업체들
- 코로나 시대, 구글은 전 세계 지역언론에 구호기금 전달. 한국의 네이버는?
- 수많은 기자회견들은 이제 식상.
- 가짜뉴스와 추측성 뉴스에 겁내지 않는 언론사들
- 지역밀착형 언론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야

기사를 거의 공짜로 받아먹는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

1)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봤다고 하지 특정 언론사에서 봤다고 하지 않는다. 왜 그 뉴스들이 네이버 뉴스고 다음 뉴스인가. 엄연히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데. 지역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뉴스를 올려도 돌아오는 건 거의 없다. (조회수 하나당 1원의 금액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 언론사들도 비슷한 뉴스들을 마구 쏟아내게 되고 뉴스의 독자성은 점점 사라진다.

기사가 많아지면 좋은 기사들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많이 보는 뉴스들 위주로 본다. 즉,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제한된 콘텐츠만 보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쁜 현대인들이 뉴스들을 꼼꼼히 찾아가면서 볼까?)

코로나 시대, 구글은 전 세계 지역 언론에 구호기금 전달. 한국의 네이버는?

1)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자 구글은 전 세계의 지역신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인식하고 긴급 구호기금을 전달했다. 156개 국가의 지역언론사들을 선정해 적게는 5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저널리즘 긴급구호기금을 전달했다. 저널리즘긴급구호기금(Journalism Emergency Relief Fund)으로 코

로나19 영향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 저널리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뉴스를 제작하는 중소규모 언론사로 지역이나 보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범위에서 자금을 제공한다.

2) 한국의 포털사이트들은 뭐하나? 뉴스로 먹고 사는 그들은 정작 언론사들의 위기가 닥쳐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반대. 왜 내가 열심히 쓴 뉴스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읽혀야 하는가?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하니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것.

수많은 기자회견들은 이제 식상.

가끔 제보를 받아 취재를 할 때, 대부분 제보자들은 자신을 밝히기 꺼려한다. 자신은 일정한 정보만 줄테니 그에 맞는 기사만 내달라고 하는 것. 기자가 좀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제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많아. 결국 기사낸 후 문제가 생기면 기자가 책임져야 하나? 제보를 했으면 기자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기사 몇 번 나오면 제보자는 사라지고 기자 홀로 사건과 싸워야 한다.

가짜뉴스와 추측성 뉴스에 겁내지 않는 언론사들

1) 이젠 언론사들도 더 이상 가짜뉴스에 겁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명백히 가짜로 들통날 가짜뉴스보다는 추측성 뉴스가 더욱 난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에 겁내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언론사에 대해 관대. 실제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음. 통계결과 가짜뉴스가 났어도 실제 소송에 임하는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역시 10분의 1수준으로 책정됨. (예를 들어 1억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도 실제로는 4~500만원 선의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됨)

2)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까지 진행해 언론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욱 지우게 하는 것.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수많은 언론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도입되기 쉽지 않음.

지역밀착형 언론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야

1) 요즘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지방 사람들에게는 마치 다른 나라 일처럼 느낀다고 함. 방송이든 신문이든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감. 굳이 지방사람들이 수도권 뉴스를 먼저 시청하고 관심가질 필요가 있을까? 서울권 뉴스는 나중에 서울 가서 살

면 그때 많이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중앙뉴스 보단 지역 뉴스에 더 힘을 실어줘야..

2) 미국의 한 주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판대 지역 신문이라고 함.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읽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 지역 사람들은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중앙신문보다 지역신문을 우선순위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도 중앙신문에 뒤처지지 않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언.

1) 제대로 된 지역신문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경남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등)가 울산에도 필요. 울산저널은 시민의 힘(공론화 역량)을 성장시켜 행복한 울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공공(퍼블릭)저널리즘>, 시민의 지혜를 모아 지역 이슈와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솔루션 저널리즘> 함.

2)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시민의 힘(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은 내가 사는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학습과 향유를 통해 얻어지는 인문소양이 밑받침돼야 함. 이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울산저널 시민학교 12개 교실 72강을 시작했고, 울산시민대학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 중. 또한 지역 언론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축제, 행사 예산이 축소될 필요가 있음.

지구의 역습,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이 상 범
(울산환경운동연대 사무처장)

1. 울산지역 코로나19 현황

울산은 비교적 지역 감염자가 적은 편이어서 ‘청정지역’이라는 평가
상대비교 : 광주 239명/145만, 대전 170명/147만, 울산 68명/115만

그렇지만 2차 확산기를 맞으면서 울산도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17일까지 확진자 누계는 68명인데 5월부터의 추이를 주목
5월 9명(44번 ~ 52번) 발생, 9명 모두 해외입국자, 국내확진 없음
6월 3명(53번 ~ 55번) 발생, 1명 해외입국, 2명 국내확진
7월 4명(56번 ~ 59번) 발생, 3명 해외입국, 1명 국내확진
8월 9명(60번 ~ 68번) 발생, 4명 해외입국, 5명 국내확진

즉, 5~7 3개월 간 확진자 16명 중 해외입국자가 12명이었고 국내 확진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단기간에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고, 해외입국자보다 국내 확진자가 더 많음

<참고자료>

2019년 12월 중국 무한에서 발병

2020년 8월 17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 2천1백만명 이상/ 사망자 76만명 이상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순(정작 중국은 8만 명 수준에 그쳤음)

전염 원 : **야생박쥐**(실험과정 전파설)

한국은 1월 20일 중국인 확진자가 입국하면서 첫 시작(누적 확진자 15,761명 사망 306명)

대구 신천지를 통한 확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코로나 19 통제를 가장 잘하는 모범국가로 찬사를 받다가 2차 확산기를 맞아 초비상

2. ‘지구의 역습’ - 코로나19와 기후위기(환경)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인간의 자연 파괴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신종 전염병 발생이 확산되고 심각해졌다는 주장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부메랑처럼 인간사회를 역습한다는 주장을 살펴본다.

“이번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것처럼 전염병은 ‘매개체’를 통해 질병을 옮깁니다. 기후변화는 이 매개체의 생존과 서식지 등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따뜻해진 겨울은 쥐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고 곤충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강수량이 감소하면 쥐는 사람주변으로 이동하여 접촉 기회가 증가되고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이 많아집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면 곤충의 생존력이 증가하고 홍수로 인해 우리의 신체나 먹는 물, 음식 등이 쥐와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에 노출되기 쉬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녹색연합 뉴스레터] 자료 참조 및 인용>

최근 세계적으로 번진 감염병 사례(인터넷 검색하여 정리한 자료)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번진 감염병 사례

2002년~2003년 사스

중국 광둥성, (37개국 발생, 8273명 감염, 775명 사망)

전염 경로 : 밀림에 사는 **사향고양이**

한국 3명 감염, 사망자는 없음

2009년 돼지독감 중국(2020년 신종 돼지독감 발병)

2012년 메르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

중동지역 발생, 1,000명 이상 감염, 400명 이상 사망

한국, 186명 감염, 38명 사망,

2013년~2015년 에볼라

서아프리카 발생 (첫 발생은 1976년)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747명 발병 8,245명 사망

전염 경로 : **과일박쥐**

사스와 에볼라 및 코로나19 공통점 2가지

밀림에 사는 야생동물을 통한 감염

교통의 발달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

1997년 매년 조류독감 반복 - 대형 감염병은 국경을 넘어 일상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약 70%는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했다고 함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 되는 감염병

신종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통해 출현하며, 대부분 매개 동물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변신하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런 중간 매개체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염 가능성도 비례해서 높아짐

인간 중심의 산림벌목, 댐 건설, 도시화 등 생태계 파괴,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규모 축산, 항생제 오남용, 유전자 변형, 편리함을 우선하는 일회용품 양산과 쓰레기 배출 등으로 신종 변형 바이러스가 출현할 조건을 만들어주고, 세계화 지구촌이라 할만큼 국가 간 잦은 왕래와 교역 증가 등으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통로 역할

코로나19 역시 야생박쥐를 식용으로 포획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정설임. 마구 잡아다 재래시장 한편에 가두고 있는 동안 매개체인 야생동물은 다른 포유동물과 접촉할 수 있으며, 도축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은 불가피하다.

[자연 생태계의 미묘한 변화는 미지의 병원균을 잠에서 깨울 수 있다. 대형 재앙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수많은 재난과 사건들이 발생하여 대형 재앙의 징후를 나타낸다. 인과의 법칙이다. 전염병의 역습이 바로 그러하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나오는 말이 생각난다. “글로벌 위험은 운명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인간의 손과 머리의 합작품이며, 기술 지식과 경제적 이익 계산의 결합에서 나온다.”

마크 제롬 월터스는 『자연의 역습, 환경전염병』에서 광우병·에이즈 등을 ‘에코데믹Ecodemic’, 즉 생태병·환경전염병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인간의 자연 환경 파괴와 자연 교란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하였다. <[녹색연합 뉴스레터] 자료 참조 및 인용>

4. 제언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발생은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의 안전지대는 없다.

전염 경로가 많은 원인부터 우선 적으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우선이다.

울산의 경우 초기에는 신천지 관련 전파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외입국자가 많았다.

그러나 2차 확산 시기를 맞으면서는 대중적인 확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인권)와 국가기관의 통제가 부딪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중심의 예방활동 캠페인과 실천 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과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행정기관의 강제력 이전에 시민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광복절 집회로 인한 후유증은 특정교단에 머물지 않고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실정법 적용 이전에 ‘민심법’이 작동해야 한다.

울산시에서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수칙 따르지 않아서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징벌적인 행정조치 및 엄격한 법 집행(형사고발, 구상권 청구)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끝>

코로나19와 위기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전달체계 붕괴와 저소득층 증가,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자 -

이 승 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이사)

1. 문제의식의 시작

- “뉴 노멀(New Normal)¹⁾ 시대, 다시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 “이 상황이 종식되면 예전 운영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 버려라”

2. 혼란과 현실

가)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붕괴

- 위·수탁 대행자로서 전통적 복지 전달체계와 공간·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의 한계
- 그동안 복지기관·시설은 행정체계 모델을 답습하며 효과성보다 효율성에 중점
- 코로나19가 닥치자 그동안의 운영시스템이 너무 쉽게 붕괴되고 무력해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복지 사각지대일수록 무력한 시스템에서 소외받고 있음.
- 모바일 활성화 및 비대면 서비스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통 방식의 부재
 - 이용시설(복지관 등)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역할 축소와 운영 방향 불투명
 - 생활·요양시설 : 감염환자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생소한 직무에 따른 업무 가중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사망
난임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 후 돌봄 청소년여가활동 청소년상담복지	일자리 (자활, 장애인 등) 생애설계 건강관리	장기요양 노인돌봄 치매돌봄 노인일자리 건강관리	호스피스 장사

[표-1] 전통적인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제공 영역

(출처 : 김용길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20년,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1) 뉴 노멀(new normal) :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문화·경제적표준을 의미하는 시사용어. 2004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위해 제시된 경제 용어였으나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로는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출처 : 다음백과)

나) 사회복지 컨트롤타워와 컨소시엄(연계체계) 부재

- 정부는 휴관 권고, 판단은 지자체가, 지자체는 기관·시설장에게 위임하는 구조
- 정부에서 코호트 관련 지침만 내려주고 매뉴얼 등 대응방안은 마련해주지 못해
- 기관은 운영 중이고, 직원도 근무하는데 대상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시휴관?
- 사실상 ‘임시휴관’이 아닌 ‘비상운영’ 체제로 가동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
-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각 직능협회별로 운영되면서 소외기관·시설 등장
 - 울산광역시 주무부서(시민건강과)는 오히려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심 호소
- 구·군과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대부분 회의조직으로 운영
- 지역 보건·의료·복지시설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상호협력 체계 미비



[사진] 울산지역 복지관 임시휴관 안내

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할 축소와 업무 가중, 사회안전망 부족

- 코로나19로 주목 받는 의료진과 달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명과 역할 축소
- 비대면 전달체계 지침에 따른 자원봉사조직 가동에 한계를 가지면서 업무 가중
- 역할은 축소되고, 업무는 가중되는데 코호트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위배
- 이용시설(복지관 등)은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비정규직 종사자 급여 지급 중단
- 임산부와 기저질환을 가진 종사자가 의심증상을 보일 때 대체인력 지원체계 미비
- 사회복지 종사자와 클라이언트 안전에 관한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물자 부족

라) 소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속출

- 감염병 재난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실업자 증가세 지속
-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한시적 효과에 그쳐
- 소득 관련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과감한 투자 정책 마련 필요
- 한국형 재난수당 체계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상병수당 도입, 기본소득 등
-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정치 지형과 파벌 논쟁에 그쳐

3. 제언(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포스트 코로나 복지체계 구축

①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인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구현 필요

② 사업 개요(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19. 6월부터 2년간 실시(1단계 선도사업)
- 사업대상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발굴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지원(읍면동 케어통합창구 / 구군 지역케어회의 설치·운영)
- 사업규모 : 16개 기초지자체(노인 13,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 / 전국단위 공모)
- 사업비(‘20) : 지자체당 7~16억(국비 50%, 지방비 50%)

③ 추진 경과(울산광역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 추진(구군 공모 안내 ‘19.1.)
- 희망 지자체(북구, 울주군) 컨설팅 및 워크숍 참석(‘19.2.)
- 市 자체심사 결과 울주군 선정(‘19.3.)
- 기본계획서 작성 및 복지부 공모 신청(‘19.3.)
 - ※ 동일분야(노인) 공모에 따른 1개 기관 선정 및 신청
-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최종 지자체 선정 발표(‘19.4.) : 울주군 미선정

④ 향후 계획(울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2020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지자체 선정을 위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추가 사업 공모 미실시(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계획임)

⑤ 기대 효과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및 프로세스 구축
-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마련
-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한 울산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다차원적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⑥ 추진 과제

- 울산 지역사회통합돌봄 총괄TF 구성 : 구·군 선도사업 신청 추진 등
-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 구축 : 단체, 기관, 시설, 전문가, 주민, 공공기관 등
- 다직종 연계기반 조성 :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 분야 등
- 지역 진단과 분석 : 대상자 사전조사, 인프라 현황, 장애요인 등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 지자체 방문, 컨설팅 협조 등



[그림-1] 커뮤니티케어 비전 및 로드맵 (출처 : 보건복지부)

나) ‘울산복지재단 설립’으로 연구중심 컨트롤타워 정립

① 울산지역 현실과 문제점

- 최근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체계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현실과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인력 채용 확대가 절실함.
- 그러나 현재 울산연구원에는 사회복지학 전공 연구원 1명이 울산시와 구·군 포함 6개 지자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8~23개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에서는 양질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책 연구와 제언은 엄두를 낼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판단과 역량에 맡기고 있음.
- 담당 공무원 역시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체계에 따라 민간기관·시설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② 타 지역 복지재단 운영 현황

- 전국 지자체 : 41개소
- 광역 지자체 : 9개소
- 기초 지자체 : 31개소
- ※ 설립 추진 : 7개소

구분		복지재단명	계
광역지자체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북행복재단, 대전복지재단 전남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 인천복지재단, 세종시복지재단	9
기 초 지 자 체	서울	강남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7
	대구	대구 달성복지재단	1
	인천	강화군복지재단	1
	대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1
	경기	김포시복지재단, 시흥시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가평복지재단	4
	강원	태백시복지재단	1
	충북	증평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	3
	충남	당진시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천안시복지재단	3
	전북	전주복지재단	1

	전남	전남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담양군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여수시복지재단, 완도행복복지재단, 장흥군정남진노인복지재단	7
	경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4
	계		32
합계			41
설립 추진	(경기) 남양주시, 화성시 / (서울)중구 / (경남)창원시, 경남복지재단 / (충남)충남복지재단 / (강원)사회서비스원		7

[표-2] 전국 복지재단 설립 현황

(출처 : 오민수 외, 2019년,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

③ 운영 목적

- 복지재단의 설립 조례 상 크게 프로그램 개발, 기부와 나눔 활성화, 시설운영, 네트워킹, 조사 연구 등으로 명시됨.

※ 단 ‘시설운영’의 경우 후술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함.

④ 기대 효과

- 울산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울산지역 상황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 정책 개발·연구
- 이를 통해 민관-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다)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감염병 재난 시 긴급돌봄체계 수행

① 필요성

- 시민들의 보편적 욕구 다양화 및 돌봄 대상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민간기관·시설 기능이 마비됐을 때 긴급돌봄체계 수행

[대구 사례]

-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격 전환
-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지원단 모집을 통해 채용한 180여명 긴급 투입
- 가족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투입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24시간 병원생활 등 지원
- 이를 통해 돌봄이 중단된 아동, 노인, 장애인 180여명에게 식사, 생활 지원
-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6개 시설에 대체인력 25명 배치
- 확진자의 24시간 병원 생활 지원을 위해 8개 병원에 70명의 돌봄인력 투입

② 사업 개요(울산광역시)

- 사업 기간 : 2020 ~ 2021년
- 법적 지위 : 공익법인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 설치 비용 : 2,700백만원(국비 10억 시비 15억) ※ 운영비 연 21억원
- 인력 규모 : 340명 이상(종사자 20명, 서비스 제공 인력 320명 이상)

③ 사업 내용

- 국·공립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 운영
 -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향상, 수급계획 등 연구수행과 지원
- ※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등급이 저조한 시설도 수탁 운영 가능

구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설립 방향	• 재가서비스 품질향상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중점	• 시립복지시설 희망원 수탁하여 운영투명성 제고, 이용자 탈시설 및 자립지원	• 커뮤니케이터와 종합재가센터 통합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제공	• 공공성 강화(도립공공센터 운영, 커뮤니케이터 연계), 기초지자체와의 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 세종형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특징	• 장애인활동지원(최중증장애인 직접서비스), 보육중심선도추진 • '21년까지 전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돌봄SOS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기준 월급제와 고용안정	• 대구시립희망원 위탁하여 정상화추진 • 대구특화형 통합학대예방센터 설립운영 • 대구형복지정책 연구개발 등	• 커뮤니케이터센터와 종합재가센터 통합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연계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국공립시설 위탁기간 종료시 서비스원 수탁 운영 추진 • 복지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기능	• 공공센터 우선수탁 운영으로 광역차원의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수행 • 커뮤니케이터와 종합재가센터 융합모델로 경기도형 전생애 통합돌봄체계구축	• 세종형복지정책 연구개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제공

[표-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 및 특징

(출처 : 김진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시민복지증진분과 2020년 8월 회의자료)

④ 추진 사항(중앙부처 및 타 시·도)

- 2017년 : 국정기획자문위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 발표 및 국정과제 반영
- 2018년 : 제9차 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발표
- 2019년 : 시범사업 추진(서울, 대구, 경기, 경남)
- 2020년 : 시범사업 신청(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구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시기	2019. 3.	2019. 3.	2019. 5.	2019. 1.	2020. 7.
설립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2020 예산	288.3억원	26.8억원	18.6억원	39.5억원	19.8억원
본부조직	1실 6팀 27명 (22년 72명)	1실 5팀 23명 (22년 80명)	1본부 4팀 22명 (22년 70명)	1협력관 2본부 4팀 20명 (22년 70명)	4부 25명
운영시설	종합재가센터 5 데이케어센터 2 어린이집 6	종합재가센터 2 노숙인복지시설 2 정신요양시설 1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구시청어린이집 1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대체인력지원센터 1	종합재가센터 2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1 국공립어린이집 5 경남커뮤니티케어센터 1	종합재가센터 2 다함께돌봄센터 1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노인일자리지원센터 1 노인종합상담센터 1 노인보호전문기관 4 대체인력지원센터 1	종합재가센터 1 다함께돌봄센터 3 어린이집 1 청년센터 1 수탁사업 3 (대체인력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표-4] 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

(출처 : 김진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시민복지증진분과 2020년 8월 회의자료)

⑤ 추진 계획(울산광역시)

- 2020년 상반기 : 시·도 자료수집, 설립 방안 논의(with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 2020년 하반기 : 설립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 의견 수렴
- 2021년 : 조례 제정, 시범 사업 운영(2022년 : 본격 운영)

라) 울산형 재난복지 정책 마련

① 울산지역 사례

-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기관·시설 대부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 돌입
-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음.
-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사람이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동모금회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긴급 돌봄사업 진행
- 코로나19로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이 임시휴관 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
- 8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한시적으로 1일 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② 정책적 문제점

-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치매노인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조선업 클라이언트, 해외 관광객도 취약계층이기는 마찬가지임.
- 이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청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와 대

부분의 지자체에는 그런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도 국민이 아닌 해외 이주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제외
→ 울주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이주민에게도 적용
- 한국은 비교적 방역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만 대부분 영어와 중국어 정도만 제공됨으로써 타 생활권 사람들은 실시간 정보를 인지하고 대비하기 어려움.
- 그나마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던 상담센터 방문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보 확인이 더 어려워졌고, 정보를 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방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게 만들.

③ 재난취약계층의 유형

- 이동 제약, 계단이동 제약, 음성의사소통 제약, 의미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 제약이 있는 사람
- ※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사망	재난
[표-1] 과 동일						재난구호 생활지원 생활재건

[표-5]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제공 영역

(출처 : 김용길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20년,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④ 향후 과제

- 재난취약계층 지원 홈페이지 구축 : 재난취약계층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언어와 시청각 정보 제공
- 울산형 실업부조 도입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정부 지원 정책 이외 '보충적 제도' 성격의 '울산형 실업부조' 지급
- 울산형 상병수당 도입 :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직장인이나 휴·폐업한 상인들에게는 '울산형 상병수당' 지급

코로나19와 울산의료원 설립

김 현 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1. 코로나19와 울산현황

- 지난 2월 22일, 울산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환자 발생. 당시 울산시 전체 음압 격리병상수는 울산대학교병원(이하 울대병원)에 있는 5개가 전부였음
- 급하게 울대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을 25개까지 늘여가고 있는 사이에 확진자가 모두 17명이 됨 (2월 28일 현재). 이 추세로 환자가 늘어난다면 음압병실이 순식간에 다 차버릴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됨.
- 곧 이어 중증노인환자들이 400명 가까이 입원해있는 이손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로 밝혀지고, 울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사태 발생. 이손요양병원에서 순식간에 집단감염이 확산되면 울대병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게다가 울대병원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와서 울대병원이 폐쇄된다면 120만이 살고 있는 울산시의 의료는 마비되었을 것. 울대병원과 이손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간을 벌 수 있었음
-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울산시립노인병원에 이동식음압병상 100개를 만들고, 울대병원에서 지원한 간호사들과 공중보건의 5명 등 의료진을 갖춰서 3월 9일부터 코로나19감염 경증 환자를 받음. 초반에 급하게 투입된 공중보건의 5명이 철수하자 울산시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맡았고,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가 된 지금은 다시 노인병원으로 환원함

2. 코로나19와 공공병원

-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서울시립병원 이용 (2020년 5월까지)
- 서울 뿐 아니라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각 시도에서 의료원이 코로나19 치료전담병원이 되어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임.
- 대구·경북에서도 공공병원들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의 약 75%를 치료하였다. 공공병상의 비중이 10%에 불과함에도 말이다. 대확산 초기에 민간병원에서 병상을 내주지 않아 2300여

명의 환자들이 어느 곳에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 울산은 첫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의 조짐이 보일 무렵에 울산시가 민간병원들에게 음압병상을 만들고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힘들다고 했다.

3. 울산지역 의료 현황

(1) 울산시민의 건강지표

○ 연령표준화사망률 (단위:명)

	2018년	2017년	2016년
전국	298.8	324.3	337.2
서울특별시	283.3	280.7	298.4
부산광역시	350.8	350.0	362.9
대구광역시	332.7	339.2	354.6
인천광역시	339.4	332.9	348.8
광주광역시	338.0	346.3	349.9
대전광역시	316.2	315.3	329.4
울산광역시	355.3(1위)	343.9 (3위)	366.9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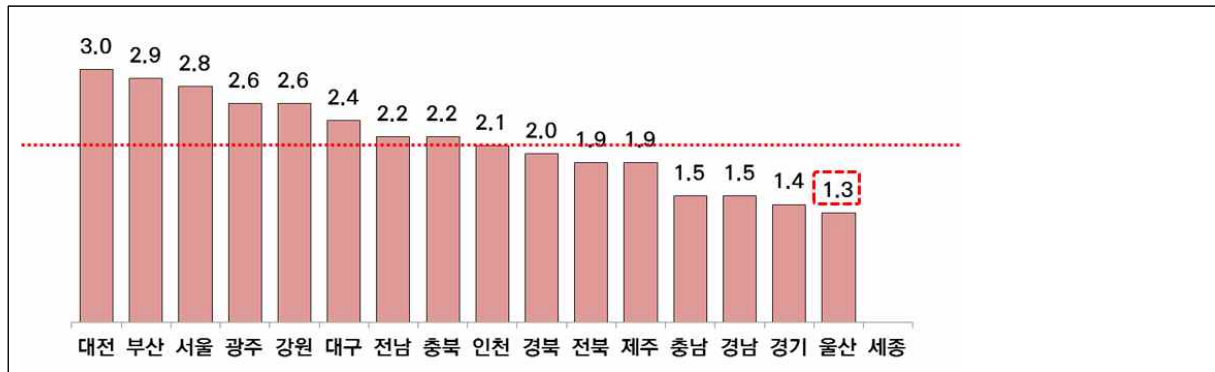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8년) (단위: 표준인구 10만명당 명)

사망원인	사망률	7대 광역시 순위
- 전체	355.3	1위
- 악성신생물(암)	97.3	2위
· 위암	10.3	1위
· 폐암	22.1	1위
· 당뇨병	14.1	1위
· 고혈압성 질환	7.9	1위
· 심장 질환	39.8	1위
· 뇌혈관 질환	30.6	1위
· 운수사고	6.8	2위
· 고의적 자해(자살)	24.2	2위

(2) 울산지역 의료 인프라 현황

① 공공종합병원 부재, 종합병원 병상수 부족

○ 전국 17개 시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천명당) (2016년) (단위: 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특광역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개소수와 병상 수 (2018년)

(단위: 개, %)

구분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국	3,937	224	5.7	641,044	63,924	10.0
서울	507	21	4.1	74,931	8,333	11.1
부산	386	10	2.6	66,138	4,009	6.1
대구	206	9	4.4	34,060	3,654	10.7
인천	188	8	4.3	29,403	1,380	4.7
광주	264	8	3.0	38,080	2,753	7.2
대전	122	7	5.7	20,933	3,129	14.9
울산	96	1	1.0	14,322	130	0.9

② 의료인력 부족

○ 7대 특·광역시 의료인력 현황 (2018년)

	의사수	10만명당 의사수	간호사수	10만명당 간호사수
서울	29,378	304	47,763	494
부산	7,852	231	16,696	492
대구	5,721	234	10,541	431
인천	4,893	167	10,355	353
광주	3,547	238	7,990	536
대전	3,629	240	6,274	415
울산	1,726	150	4,003	348

③ 응급의학전문의수, 중환자병상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수 부족

○ 응급의학전문의수(2018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문의수	753	79	90	100	78	68	17
십만명당	7.7	2.3	3.7	3.4	5.3	4.6	1.5

○ 중환자병실 및 병상수 (2018년)

	전체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수	십만 명당	병상 수	십만 명당	병실 수	십만 명당	병상 수	십만 명당	병실 수	십만 명당	병상 수	십만 명당
서울	208	2.2	2,426	25	166	1.7	1,894	19.6	42	0.4	532	5.5
부산	88	2.6	861	25	73	2.2	704	20.7	15	0.4	157	4.6
대구	49	2.0	520	21	31	1.3	370	15.1	18	0.7	150	6.1
인천	46	1.6	581	20	40	1.4	505	17.2	6	0.2	76	2.6
광주	26	1.7	421	28	23	1.5	341	22.9	3	0.2	80	5.4
대전	25	1.7	380	25	21	1.4	288	19.1	4	0.3	92	6.1
울산	14	1.2	174	15	13	1.1	144	12.5	1	0.1	30	2.6

○ 지역별 분만기관 수(2018년)

	분만기관 수 (개소)	인구 천 명당 기관 수
서울	98	3.8
부산	36	4.5
대구	25	4.2
인천	31	4.2
광주	12	3.2
대전	28	7.3
울산	8	2.8

④ 울산시 자체의 공공의료정책 수립 및 공공의료지원 체계 부재

⑤ 감염병 관리 인프라 절대 부족

음압격리병상 부족,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부족(감염내과 전문의 1명), 역학조사관 1명

⑥ 의료취약계층(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지원 부족

4. ‘울산광역시 감염병 대응’ 제안

(1)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 울산시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울산시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현재 울산시에서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추진 중

(2)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마련

- 의료기관별 음압병상과 완화병상 설치 점검:
감염병 의심 환자를 단기간이라도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 확충 필요
- 의료장비(방호복,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에크모 등) 확충
- 전문 의료인력 확충
- 경증-중등증-중증-최중증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마련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3) 감염병 확산 시기에 일반 진료 체계 점검

- 각 의료기관별 일반 환자 진료 상황 점검: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4) 역학조사관 확충 및 훈련 점검

- 단기 전략: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역학조사관 기능 부여
- 중장기 전략: 시립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전담 부서 설치

(5) 울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현재 울산시에서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추진 중

(6) 울산의료원 설립

5. 코로나19와 울산의료원 설립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시민 사회 뿐 아니라 직접 행정을 담당했던 울산시도 공공병원 부재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하지만 울산산재병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울산시와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울산산재병원은 산재환자의 재활치료 및 장기 요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병원으로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확산 등 응급 상황에서 울산시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제 하에 감염병 환자 치료, 감염병 확산 차단, 방역 강화, 광범위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울산의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울산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필수의료인프라 부족 개선, 울산시 공공의료체계 마련 등의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울산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울산시 코로나19 정책현황

김 지 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1. 코로나19, 모두의 위기 시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낯선 시기이자 모두의 위기 시절이다. 건강/보건의 위기이자 경제/일자리의 위기 시절을 지나고 있다.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다가,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는 장기 위기의 시대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 규모에서부터 국가단위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서부터 세계경제구조의 재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큰 국가의 복귀가 그러하다. 지방정부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행정 및 재정 운영을 필요로 한다. 복지전달체계, 일자리 정책, 지방공공의료, 일상행정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

관련해 전국 및 각 지역에서는 당면한 코로나19 문제 그리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울산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당면한 경제/일자리 현황 - 울산시의 코로나19 추경(2차) 내역 - 그리고 코로나19 정책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가 미친 울산의 경제/일자리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위기로 지역산업축인 자동차, 화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은 물동량 감소 등으로 수주 축소 등이 있으나 전년 수주잔량, 신규수요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제조업 생산·출하·재고¹⁾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4월	2/4	3/4	4/4	1/4 ^P	2월 ^P	3월 ^P	4월 ^P	
생 산	3.3	1.8	4.3	4.0	1.1	-3.4	-6.7	-15.3	5.2	-8.5	
[계절조정후전기비]	--	--	-0.2	-1.7	3.3	-2.8	-6.4	-21.3	32.3	-9.4	
석 유 정 제	-1.2	-4.1	10.4	2.0	-6.9	-8.1	0.9	-1.0	11.6	-1.1	
화 학 제 품	0.7	-1.3	-2.9	-0.4	-1.2	-5.0	-1.8	1.9	-2.6	-1.5	
1 차 금 속	-0.9	-6.4	2.2	0.2	-12.3	-14.7	-0.4	6.4	-3.9	0.5	
기 계 장 비	-10.7	-5.0	-22.2	-27.6	-2.6	2.7	-19.2	2.6	-16.3	12.5	
자 동 차	12.2	6.1	9.5	11.0	3.1	-0.8	-13.9	-43.8	11.7	-19.5	
조선·기타운송장비	-7.1	18.8	18.5	34.5	22.4	-10.9	1.0	26.8	4.7	6.7	
출 하	1.1	0.6	4.6	2.7	-1.2	-3.4	-3.6	-0.1	1.5	-7.0	
재 고 ²⁾	8.9	9.5	5.0	9.6	13.9	4.0	5.3	-4.6	9.5	19.9	

주 : 1)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2018년 기준) 및 연간보정 결과 반영, 계절조정 등으로 원계열은 2015년부터, 계절조정계열은 2000년부터 일부 시계열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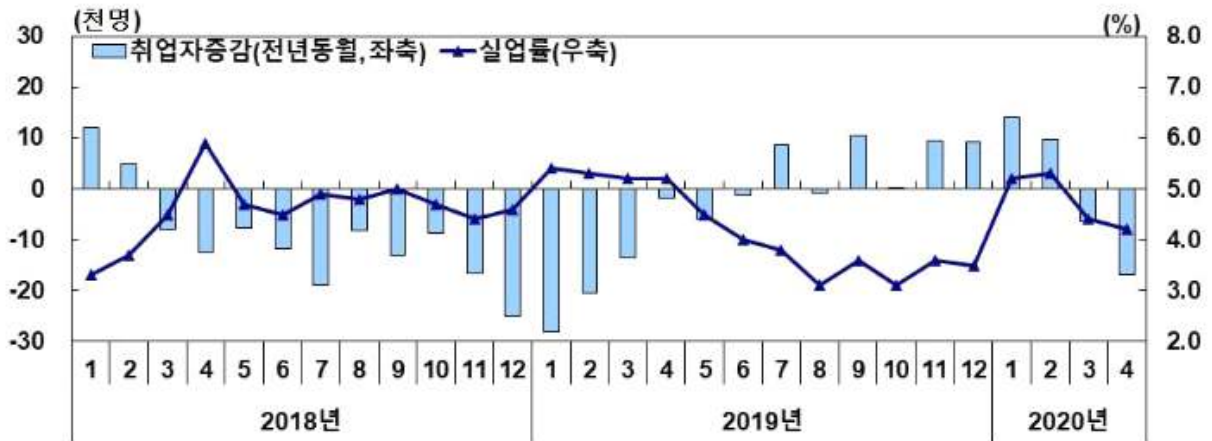
2) 기말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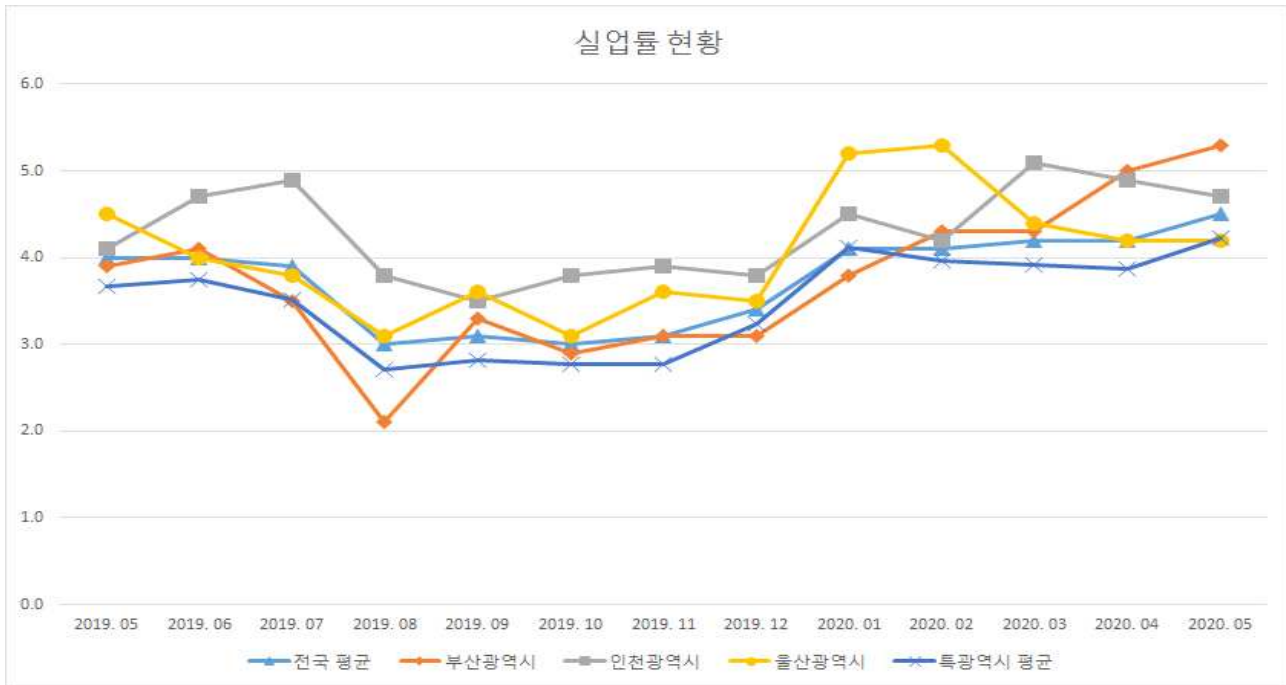
<그림1> 울산지역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현황(출처: 한국은행)

실업률은 전국 평균 상회. 3월부터 취업자 감소. 이는 지역내 총생산액 비슷한 인천과 부산에 비해 높은 수준.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그림2> 울산지역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출처: 한국은행)



<그림 3> 울산 및 주요도시 실업률 현황

* 지역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2010년 기준년가격 기준. 부산: 74조, 인천: 73조, 울산: 73조)

2019년 4월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속. 취업자 수 감소.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1만 9천명, 건설업 -3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3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1만 8천명 증가. 중국발 코로나 세계경기 여파 확인.

고용관련 주요지표¹⁾²⁾

(천명,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4월	2/4	3/4	4/4	1/4P	2월P	3월P	4월P	
15세이상인구(A)	973	967	968	967	966	965	965	965	965	965 (-3.1)	
경제활동인구(B)	602	596	600	601	597	598	594	601	581	576 (-23.7)	
실업자 수(C)	28	25	31	27	21	20	29	32	26	24 (-6.8)	
취업자 수(D)	574	571	569	574	576	577	564	569	556	552 (-16.9)	
(농림·어업)	6	6	6	6	7	7	7	7	6	7 (1.1)	
(제조업)	185	176	181	182	177	170	168	168	168	162 (-18.7)	
(건설업)	46	39	40	41	40	38	37	37	38	36 (-4.1)	
(도소매·음식숙박업)	111	108	105	109	112	107	109	111	104	105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80	189	189	187	188	198	188	189	187	189 (-0.4)	
(전기·운수·통신·금융)	47	52	48	49	52	57	56	57	54	54 (5.5)	
비경제활동인구	371	370	368	366	369	367	371	364	383	388 (20.6)	
경제활동참가율(B/A)	61.8	61.7	62.0	62.2	61.8	61.9	61.6	62.3	60.3	59.7 (-2.3)	
실업률(C/B)	4.6	4.2	5.2	4.6	3.5	3.4	5.0	5.3	4.4	4.2 (-1.0)	
고용률(D/A)	59.0	59.1	58.8	59.3	59.6	59.8	58.5	59.0	57.6	57.2 (-1.6)	

주: 1) 연간 및 분기는 해당기간의 월 평균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4> 울산지역 고용 지표(출처: 한국은행)

소비의 경우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4월 대비 -3.6% 감소. 카드사용액은 -57억 감소(전년 4월 - 3월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 확인.

소비관련 주요지표¹⁾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4월	2/4	3/4	4/4	1/4 ^P	2월 ^P	3월 ^P	4월 ^P
대형소매점 ²⁾ 판매지수 ³⁾	86.5	84.4	78.3	80.5	84.9	85.7	75.7	70.0	63.7	75.5
	(-5.7)	(-2.4)	(-6.2)	(-3.8)	(-2.1)	(-0.9)	(-12.4)	(-13.6)	(-29.2)	(-3.6)
(백화점 판매액 ⁴⁾)	7,979	7,797	626	1,891	1,799	2,129	1,563	475	395	543
	(-4.1)	(-2.3)	(-4.2)	(-0.6)	(-2.7)	(-1.7)	(-21.0)	(-23.1)	(-44.7)	(-13.2)
(대형마트 판매액 ⁴⁾)	8,434	8,219	615	1,930	2,223	1,942	2,071	643	627	661
	(-4.9)	(-2.5)	(-7.1)	(-5.6)	(-3.3)	(-0.4)	(-2.5)	(-3.9)	(-11.4)	(7.4)
신규승용차등록대수 ⁵⁾	35,741	33,863	3,079	8,835	7,896	9,178	7,312	1,693	2,992	3,298
	(-5.7)	(-5.3)	(-9.2)	(-5.2)	(-1.9)	(3.5)	(-8.1)	(-17.5)	(12.3)	(7.1)
<승용차등록대수 ⁶⁾ >	468.3	476.4	471.2	472.3	474.7	476.4	478.4	477.3	478.4	479.2
	(1.9)	(1.7)	(1.5)	(1.5)	(1.6)	(1.7)	(1.7)	(1.7)	(1.7)	(1.7)
개인신용카드유통업사용액 ⁷⁾	13,401	13,336	1,080	3,324	3,446	3,377	3,167	992	1,023	..
	(2.9)	(-0.5)	(-1.8)	(0.2)	(-1.2)	(0.2)	(-0.7)	(-0.3)	(-6.5)	..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매장면적 3천㎡ 이상의 점포

3) 불변지수(2015=100) 기준, 연간 및 분기는 기간중 평균지수임

4) 경상금액, 억원 5) 기간중 등록대수, 대 6) 기말기준, 천대

7) 울산지역 유통업(백화점, 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가맹점 기준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억원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은행

3. 예산으로 본 울산시의 코로나19 대응

1) 세출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편성 방침을 밝힌 후 3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는 956억원을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1981억원을 편성했다.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3월에 먼저 편성하고, 4월에는 다소 규모가 줄어 7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정했으나 오히려 규모가 더 늘어났다.

울산시는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9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8월 21일에 3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3차 추경 역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을 위한 방향에 따라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 194억(2차 추경대비 8.5조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1.9조(4.6조 증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구분		사업건수	편성액 (시 발표)	국비	시비
계		61	1195*	414	820
코로나19 예산	코로나19 긴급대응	11	56	50	6
	코로나19 피해극복	8	370	75	295
POST 코로나19 예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42	769	289	519

<표1> 2020년 2차 추경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단위: 억원. 출처: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안 보도자료 및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안)

(* 국·시비 개별액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천만단위 반올림 및 일부 기존 사업의 균특회계 삭감과 기금 증액 등 재원 조정과정의 변화에 원인.)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밝힌 것들 중 왜 이렇게 분류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가령 버스지원금의 경우 애초 당초예산에 미반영해놓은 것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중 과연 코로나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 해설이 필요하다. 외에 각종 도로사업 등 코로나 대응 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하거나, 확대 편성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2) 울산시 208억 마련 주장 - 세출조정의 타당성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반기의 축제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태화강 불꽃대회 0.5억, 태화강 국가정원 1주년 행사 2.0억 증액) 사업도 있는데, 사업의 성

격과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무엇보다 세출조정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태화강역 정비사업(15억) 등 몇 십억 단위의 사업들이 시기조정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그 연유를 살피고 혹여 불요불급하거나 연례답습적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가용성을 떨어뜨린 것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사업(59억)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이유로 새롭게 편성한 연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구분	증액 내역	감액 내역
보수(101-01)		△2.0억
여비(202)		△18.6억
민간인국외여비 등		△4.1 억 등
축제, 행사	태화강국가정원1주년행사(2.0억), 태화강불꽃대회(0.5억),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1.0억) 등	건강박람회(△1.0억), 진하서핑대회(△0.5억), 태화강달빛기행(△0.5억), 어린이날행사(△0.8억), 웰빙라이프(△1.0억) 등
세출조정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59.0억), 삼동-KTX도로(5.0억), 장생포순환도로(2.0억) 등	태화강역 조성 사업(△15.0억), 옥동-농소 도로사업(△70.0억), 산업로확장(△45.0억) 등
비고		208억 감액

<표 2>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 세출조정 내역 (출처: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예산안)

3) 코로나19 시대, 울산 고유의 경제, 고용정책 개발 필요

울산의 3월달 15~64세 고용률은 62.5%로 이는 코로나19 집단확진이 발생한 대구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7천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직격한 산업인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을 비롯해 제조업에서도 줄어들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도 3600여명 증가한 상황이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성, 고령자, 임시직, 자영업자, 서비스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²⁾된다.

가령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지난 5월 조사 기준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울산시가 비교적 폭넓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2)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여연대 (2020.04.24.)

지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울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근로자	-일 2.5만원 -월 50만원 이내 -40일 이내 -울산페이 지급	-광주: 일3만원 -경남: 최소 5일, 최대 20일 -충남: 중위소득 120% 이하 -광주·전남: 100인 미만 사업장 실직자와 근로자

<표 3>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현황. 기준. 2020.05.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지원대상	지원 기준	대상 기간	지원액수
울산	(기준) 4/8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위 소 득 100% 기준 4인 가구 475만원 이하) (수정) 5/1 신청자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20.2.23.) 이후 및 '20. 4월.	일2.5만. 월최대50만. 2개월. 울산페이.
서울	중위소득 100%이하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이전대비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	'20.2.23. 이후	가구당 50만원 (최대 1명, 1회)
대전	-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또는 '19.12월(또는 '20년 1월) 대비 '20. 3월 소득금액이 25%이상 감소 또는 '19.12월(또는 '20년 1월) 대비 '20. 3월 소득금액이 25%이상 감소한 자	'20.2.23. 이후	일 2.5만원 2월 최대 5일, 3월 최대 20일 (최대 62.5만원 지원)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광주	중위소득 100% 이하.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또는 소득감소율이 25% 이상 피해월(2-4월) 직전 1개월,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월	2020.2.3. ~ 5.2.	5%이상 50만원 미만 감소: 30만원/월 25%이상 50만원 이상 소득감소: 50만원/월

		또는 전년동분기 대비 소득 감소액 중 유리한 구간 선택		2개월, 월50만원
인천	중위소득 100% 기준 4인가구 480만원 이하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자는소득(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20. 2. 23.부터 '20. 3. 31.	· 소득감소율 25%이상 50%미만: 25만/월 · 50%이상 75%미만: 37.5만/월 · 75%이상 100%이하: 50만/월 · 1개월

<표 4> 코로나19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출처: 각 시청 홈페이지)

울산시가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단위 사업은 무엇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매칭 외 예산을 더 편성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신규정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울산시의 코로나19 관련 추진정책

1) 울산시 대응 및 주요정책

a. 비상경제대책회의 1차 회의 주요내용(3/25)

: 코로나19 긴급지원 및 위기극복

- ①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미시행) ②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국비100억/시비 100억)
- 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국비 20억/시비100억) ④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금융지원(기존1600억→2600억) ⑤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노후상수도관 조기교체/예타면제사업 지역업체 참여 등) ⑥ 범시민 모금운동 전개 ⑦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울산페이 확대, 현 대차 사회적 대타협 등)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노사민정) : 울산 큰두레
-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노사민정)
- 코로나19 위기극복 실무 TF 구성(시청)

b. 비상경제대책회의 2차 회의 주요내용 (4/20)

: 울산형 뉴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

- 울산형 뉴딜(스마트 클린워터사업-상수도관 교체 등, 산단 르네상스- 산단 녹지의 공공목적 용도변경-임대주택 등)
-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주력산업 위기대응 노사정 포럼 -자동차, 유화산업 노사정 협의체 등,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공급, 골목상권 활성화-울산페이 등)

c. 비상경제대책회의 3차 회의 주요내용(6/11)

- : 일자리 지키기 협력선언
-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지원계획 발표.(5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 100억 규모 지원(시비 / 고용유지지원단, 고용유지장려금, 4대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자금 지원, 일차리 창출 지원 등)

2) 울산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고용지원 정책

- 고용위기 근로자 및 일자리 지키기 지원
 - :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정책
 - : 특별고용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 지원-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지방비 4억)
 - : 일자리 지키기 협력사업 | 울산 일자리 지키기 협력선언(노사민정)
(고용유지지원단, 고용유지장려금-기업부담분 일부, 4대보험료-기업부담분 일부, 고용안정자금 -500억, 지방세 징수유예, 일자리 창출지원-청년신규채용장려금 등, 매출채권 보험료-보험료 50%)
- 코로나19 극복 청년잡스(JOBS)
 - : 울산청년 잡잇기 (지방비 10억)
 - :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지방비 1억)
 - : 고용위기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시비-재난기금 50.2억)
 - : 외식업체 입식좌석 개선지원 (시비-재난기금 10억)
 - :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국비-중소벤처기업부 5.1억)
 -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권고업종 지원 (시비-재난기금 37억)
 - : 외식업체 입식좌석 개선지원(시비-재난기금 10억)
- 지역상권 활력 제고
 - : 시장할 땀 시장으로

- : 1기관-1시장 자매결연
-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촉진
- : 울산페이 발행 확대(1000억 → 3000억)

- 공공일자리 확대 및 주력사업 고용안정 지원

- :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국비 20억, 지방비20억)
- : 희망일자리 사업 (국비314억, 지방비 35억)
- :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국비 3억, 시비 2.2억)
-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국비24억, 시비3억)

-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

-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차: 중소기업 4488억, 소상공인 3860억/지역2210억, 정부 6138억) (2차: 중소기업 1947억, 소상공인572억 / 시 1400억, 구군 1119억)
- :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 (공공조달, 사이버 화상 수출상담회 등)

3) 실제 지원현황(일부)

2020.06.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구 5/29. 공개처리 6/1~6/11 등)

사업명	지역	대상 인원	예산안 (억원)	신청(명)	지원(명)	비고1	재원	대상
청년 잡 잇 기 (job)	중구	108	2.5	125	101		시 비 (시 재난기금)	채 용 지 연 및 실 직 청 년 대 상
	남구	50	1.36	107	50			
	울주군	39	1	42	31	선정기준 미 달 등		
	북구	64	1.6	79	64			
	동구	53	1.3	70	53			
계		314	7.76	423	299			

<표 5> 울산 5개구군 코로나19 대응 청년 잡잇기 선정 결과. 2020.06.

구분	사업	인원 (계획)	금액 (억원)	지원 (명)	집행액 (억원)	비고1	재원	대상
지 역 고 용 대응	저 소 득 무 급 휴 직	3800	40	1701	11.5	월50만원 올 산페이, 2개 월	국,시비 분 담 확인 필 요	50인 미만, 5일 이상 무급휴직 사업장, 고 용보험 가입자 대상
	특 수 형 태 근 로 종사자/ 프 리 랜 서	8600	90	8115	58.1	일2.5만.월최 대 50만.올 산 페이.2개월	상동	울산 특고 노동자 34000명/한국노동연 구원 18년 조사.
	직 업 훈 련 중단 훈련생		1	47	0.08	월12만.올 산 페이.2개월	상동	코로나로 중단된 훈 련생
	실 직 자 단기 일 자리	315	20	362	≡	월180만. 현 금. - 최 저 임 금.3개월	전액국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지역별 현황은 아래 참조
코 로 나19 피해 소 상 공인 지원	휴업 피 해 점 포 소 상 공 인 지 원사업	10000	100	6195	50.2	50.2억 지급	시비	
	확 진 자 방 문 점 포 재개 장		2			진행 중		확진자 방문점포 재 개장 지원
	코 로 나 휴 업 점 포 재개 장		3.1			진행 중		
	외 식 업 입 식 좌 석 개 선사업	350	10			진행 중	시비	업소당 최대 300만 원

<표 6> 울산시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진행 결과. 2020.06.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선발인원	362명	90명	74명	56명	70명	72명

<표 7> 울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단기 일자리 선발 결과. 2020.06.

계	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317	42	173	30	43	1	28

<표 8> 울산시 특별고용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 지원결과. 2020.06.

사업명	지역	대상 수	예산편성액 (억원)	집행 수	집행금액 (억원)	집행률
아이돌봄쿠폰	중구	11,304	4.5	10,739	4.2	95.0%
	남구	15,940	6.3	15,407	6.1	96.7%
	동구	10,397	4.1	9,935	3.9	95.6%
	북구	17,537	7.0	16,951	6.7	96.7%
	울주군	12,013	4.8	11,538	4.6	96.0%

<표 9> 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쿠폰 지급 현황. 2020.06.

구분		지급대상 가구수	지급 예정액(억원)	지급가구	지급액 (억원)	집행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쿠폰	중구	6,191	35.3	6,026	34.5	97.7
	남구	7,070	40.8	6,790	39.4	96.5
	동구	3,616	21.1	3,412	20.0	94.6
	북구	3,452	21.1	3,247	20.1	95.3
	울주군	5,180	29.2	5,013	28.5	97.4
합계		25,509	147.8	24,488	142.7	96.5

<표 10> 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쿠폰 지급 현황. 2020.06.

4) 울산시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정책

- 울산형 뉴딜
- 도시인프라 및 행정, 산업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 : 일자리 창출형 공공민간투자사업 조기 착수
 - : 해당 사업 지역업체 참여보장 및 지역민 우선 고용
 - : 도시공간, 산업인프라 스마트·디지털화
 - : 민자유치 확대.
- 3대 분야 15개 과제
 - : 휴먼 뉴딜 (먹는 물 선진화 사업 등 5개)
 - : 스마트 뉴딜 (스마트 시티 등 5개)
 -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5개)
 - : 매주 1개 사업씩 발표 중(현재 7/16 기준 13개 발표)

5. 제안

실무형 코로나19 거버넌스 구축 - 현장 기반 정책생산과 모니터링 진행 필요
포스트 코로나? - 지역사회 합의와 검토없이 제시되는 울산형 뉴딜 정책
좋은 재난 거버넌스 통한 지역의 민주주의 진전 계기로 삼아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 중이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롯해 노사민정 협의기구인 화백회의와 산업별 협의기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시민참여를 위한 울산 큰두레 등 실로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부단위 중심의 거버넌스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과별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개선방안 마련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경제대책기구 산하 협의체의 경우에도 발표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정도이지 세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기존의 행정 중심의 동원형 거버넌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제시되는 이른바 울산형 뉴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제대로된 검토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역사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을 통해 의제들이 생산되고, 이를 행정에서 실제 사업화를 검토하는 등 나름의 의제생산과정을 거치는 반면 울산의 경우 기존사업의 가공, 행정이 제안한 의제의 추진형태로

지역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울산의 포스트 코로나 대안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지 알 수가 없다. 가령 지방정부의 싱크탱크라 볼 수 있는 ‘지방(발전)연구원’의 대처를 보면 울산의 대응은 한참이나 느렸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3월달에 각 산업별 상황과 위기극복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른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제안도 이미 이 당시부터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외에 각 광역단위 지방연구원도 늦어도 4월부터는 주제별로 지역위기에 대한 점검과 검토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울산연구원의 경우 6월에서야 간단한 페이퍼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규모는 몇천억 단위가 술하고, 적어도 10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울산형 뉴딜의 정책생산이 지역싱크탱크도 아니고, 행정 내 민관거버넌스에도 논의되지 않은채 발표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미래정책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대응이야 그렇다쳐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만큼 이제는 행정, 시민사회, 전문연구단위, 노동 등 실무단위에서 정책개발 및 현실화를 위한 실무형 워킹그룹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 반영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아보면 민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역사회 민간영역의 논의자체가 상당히 늦게 시작된 편이다. 불평등한 모습이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대처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늦어진 점은 울산의 취약한 시민사회 역량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책무를 강하게 묻는 것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을 거치며 사회가 경험하는 방식에 -즉 민주주의의 방식인지, 전체주의적 방식 인지를- 따라 그 효용성을 체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경험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형 포스트 코로나 대응 회의

■ 진행방향 및 일정

▲ 1단계(~ 6월 10일까지) : 논의를 위한 기본틀 준비

시민사회와 새로운대전위원회(시장 정책자문기구, 이하 새대위)가 정리한 의제

대전세종연구원(이하 대세연)이 정리한 의제

외부전문기관에 제안한 의제

랜선파티를 통해 모인 시민의 의제

▲ 2단계(~7월 10일) : 워킹그룹에서 정책화

구성은 내부기획단(행정) + 전문가(새대위, 시민사회, 대세연)

: 대주제는

- 사회안전망 :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시스템, 사회안전망 등

/ 시민안전실, 보건복지국, 일자리경제국, 소방본부

- 산업혁신 : 디지털경제, 비대면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등

/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 공동체복원 : 사회적연대, 사회혁신, 사회적가치, 돌봄의 사회화 등

/ 자치분권국, 공동체지원국

- 행정혁신 : 스마트오피스, 빅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 정책기획관, 자치분권국

- 대전형뉴딜 :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디지털화, 디지털물류 등

/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 워킹그룹을 구성을 위한 영역별(새대위, 시민사회) 3인씩 담당자 및 책임자 추천

-> 추천은 6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에 반영)

▲ 3단계(7월 20~ 이후) : 발표 및 수정 보완 정책화

- 2단계 내용 발표

- 이후 수정보완 후 정교하게 정책화.

- 정책화를 위한 워킹그룹 지속 운영.

(*예산반영 정책의 세부내용 마련)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20 울산인권운동연대
2000-2020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혐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 2

2020.8.21. 금 오후 06:00-08:00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3층 강당 (동구 현대백화점 옆)

지역별 발표

- [제주지역] 제주지역 인권보장 체계-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와 지역사회 협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
- [대구지역] 대구 경북지역 인권행정 추진 현황과 인권제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 [전북지역] 전북지역 인권보장체계 현황과 문제점-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
- [충청지역] 충청지역 인권조례 폐지운동 현황과 인권운동진영의 대응 사례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들' 이진숙 대표
- [광주전남] 광주지역 인권보장체계-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사례와 인권마을만들기
광주인권지기 '활짝' 최완옥 대표
- [경기지역] 경기도 시도별 인권센터 현황과 경기지역인권위원회회의 운영사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 [울산지역] 울산형 인권옹호관제도의 실험-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위원회제도의 도입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윤경일 연구원

종합토론

- [좌장] 오문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 논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의 인권감수성, 그리고 다양성과 전문성

신 강 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제주인권조례의 현황]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때를 거슬러 생각해보면 2014년경부터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제주인권조례’) 초안을 고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한 차례 인권조례 거부사태를 겪고 난후 2015년 10월 5일 제주인권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안도의 한 숨도 잠시, 인권위원회의 구성부터 행정부내 인권체제를 갖추게 하는 데에도 고민이 계속 되었습니다. 1기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나름 기쁨도 있었지만, 2기, 3기로 이어지면서 인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명칭에서도 보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이 광역자치 단체만 있는 특별한(?) 제주도에서는 인권체제가 특별히 도지사로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제주인권조례는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나중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강화된 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자면 제주인권조례는 인권침해구제 조항에 있어서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권침해구제의 방식에 있어서 연성제재 방안만을 고민하게 되면서 ‘권고’ 형식 이외의 인권침해구제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분야별 인권위원 위촉, 인권헌장, 소수자인권운동장, 인권도서관,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등 인권정책 관련 역할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행정은 이러한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제주도 인권팀은 다른 업무와 혼재된 업무부서의 성격을 띠다가 2019년에야 인권업무만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나마도 팀장 1명, 공무원 2명, 외부임기제 인권전문관 1명이 팀의 전부입니다. 조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직 구성

이며, 인권기본계획 1차 계획을 통해서 제안된 인권센터의 구성이 계속적으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인권보장체제는 인권전문조직의 구성을 통한 체제 구축이 핵심입니다. 인권전문조직을 민관이 함께하는 인권센터, 도지사 직할의 인권담당관체제, 그리고 행정부내 인권전담부서 등 인권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두고 제주 지역내에서 고민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독립적인 법적 지역인권기구 설립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2019년 11월 개소하였습니다. 출장소의 개념 자체가 국가인권위와 중앙행정부 간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출장소 인원이 3명이었는데, 그나마 1명은 광주사무소에서 파견 받은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광주사무소의 정원수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수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의견 표명을 요청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상징성 때문에 나름 제주도와 지역사회가 인권이슈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표명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인권조례를 통한 제안점]

- 인권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면, 인권위원회의 내부 관점이 다양해집니다.

조례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위촉이 이뤄지는데, 제주지역만 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아동/청소년, 학계, 법조계, 스포츠, 도민공모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민간단체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 인권법 및 인권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들의 참여가 많이 줄었지만, 한 가지 인권 이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분석하게 되고 매우 다양한 사안 검토가 이뤄집니다.

실제, 제주지역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사의 급여 관련하여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계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의 관점도 보강되면서 꽤 흥미로운 의견 나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제주스포츠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스포츠분야의 인권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도 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위원 위촉은 추천단체의 관련성과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례상 관련단체로 인정하고,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공모하는 형식으로 임시로 문제를 봉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회 위촉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있지만 내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해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관련 전문가를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인적구성은 사실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권적 관점을 통한 사안의 분석, 평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1기 제주인권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인(지역인권전문가, 지역장애인활동가, 도의회 법률자문위원)를 위촉하여, 인권진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경우 외부전문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1차적인 정리, 보고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부위원장이 맡았고, 관련 분야의 인권위원과 관심있는 위원들을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리된 보고서를 소위원회위원장이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이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주인권조례는 공무원출석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안별로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도행정부의 입장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소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위원들의 역할을 도맡아 수행함으로써 제주도의 본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위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위촉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고, 전문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인권감수성이 위촉 기준이 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 행정부내 인권행정협력체계 구성 등 여러 가지 이슈 등 현재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와 지역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

-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선도적 의견표명과 사회적 논의 촉발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광역지자체에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인권행정의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권행정을 행정의 한 분야로 보는 인식이 강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권 담당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권행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사무소는 지역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내 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사무소의 지역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이

있는 인권이슈에 대한 지역적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무소가 지역인권이슈에 대해서는 완결적인 인권프로세스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국가인권기구가 지역단체 또는 지역 인권기구와 연대, 협력할 때 소통의 창구로 지역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권사무소가 지역내 인권단체/기구와 연대하여 지역내 인권체제를 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기구로 그 성과를 모아 국가의 인권정책을 변화시켜내는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을 위한 지역간 연대 및 네트워크 제안]

– 과거 제주도에서 제주인권회의가 열리곤 하였습니다. 2016년 제8회 제주인권회의를 끝으로 현재 제주인권회의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제주인권위원회는 제주인권회의를 ‘제주평화인권포럼’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럼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중심으로 제주도내인권단체들이 제주평화인권포럼을 추진하였고, 다산인권센터, 인권재단사람과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하는 포럼으로 기획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포럼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내 인권관련 전국 포럼은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과 서울인권컨퍼런스가 있습니다.

– 하여 2021년 제주평화인권포럼이 지역인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포럼으로 기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 포럼이 아닌 국내의 지역인권을 전문으로 다루고, 지역간, 학계와 인권운동진영간의 인권적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은 나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끝.

사람중심, 인권도시 대구로 변화하기 위한 현황과 과제

서 창 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라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코로나19재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며 방어적이고 재난현장에 대한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기보다는 행정 편이적 전시적 동원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난을 개인화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낡은 효과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와 감염병 위기는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한다.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미 수많은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이후의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재난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재난 이후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부터 다시 지역으로부터 인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인권행정과 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인권시민사회의 역할과 고민이 필요하다.

1. 지역의 인권제도에 대한 현황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 그 선두주자는 앞서 언급한 인권조례의 제정하고 있으며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일반 주민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조례내용의 실효성 및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인권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권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체제하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인권체제’란 한 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각종 제도, 규범적 가치,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를 의미.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인권의식과 같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시민들의 실천 역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제도는 인권체제의 하위개념으로서, 인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장치, 즉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정책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 낸 법률, 정책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제도들을 의식적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을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의 정당성 확보와 인권실현을 위한 법률, 규범, 조직 등 각종 장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그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을 꾀하는 것은 인권제도화의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제도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크게 인권규범의 마련, 인권제도의 도입, 인권정책의 추진 등일 것이다.

먼저, 인권규범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인권을 법적인 규범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인권조례의 제정이 대표적이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인권헌장 혹은 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인권행동강령의 선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인권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도적 조치로서 행정기구인 인권담당관실이나 인권센터를 설치하거나 인권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인권정책은 인권도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인권행정과 인권관련 사업으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지표의 마련,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시행 등으로 구성이 필요하다.

2. 사람중심, 인권도시 대구를 위한 행정의 과제

첫째, 인권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인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 본연의 문제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인권제도의 운영 및 실천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인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혀있거나 인권의 이해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이해에 의해 지역의 인권제도화 진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인권조례 증진과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지역인권사무소) 일상적 논의

국가인권위가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이래 각 지자체들이 인권조례 제정이 되었으나, 충남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는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인권의 주체는 주민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조례는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주민 참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인권시민사회,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을 위한 일상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및 인권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인권 업무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감수성이 부족할 경우, 각 종 인권 업무 시행 과정에서 답답한 장벽을 만나게 되고, 이른바 ‘골든 타임’을 잃게 되는 수가 많이 있음.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동시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과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인권옴부즈맨 포함)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집행부의 인권 담당 업무를 감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이나 인권옴부즈맨의 인권감수성은 물론 인권 관련 전문성도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넷째,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배치·운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 협치를 촉진하고, 각 업무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견지하는 한편, 비차별적이고 투명성을 갖춘 인권행정 구현, 인간 존엄의 가치 하에 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인권중심적인 법의 지배에 근거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역인권의 공기를 본질적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지역인권운동의 역할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과 의제에 대한 상호소통이 지역의 인권화를 촉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주요 의무인 것이다. 지역에 있는 법 집행 기관, 법률가 집단,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묶는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역 인권의 보장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인권이 ‘수사적 장치’로 남발되고 있다.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운동이나 인권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할 경우 인권주체들의 참여나 인권시민사회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주체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이러한 지역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않을 수 있는 지역의 지형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운동이 가지는 지역운동의 강제와 규정력 또한 당사자 운동으로 환류시키는 특정적 특수한 운동의 조건을 어떻게 지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으로 드러나는 지역인권운동과 행정의 긴장을 어떻게 녹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화시키야 한다.

이러한 토대로 명실상부한 ‘인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함. 인권조례 제정 및 제도화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인권조례를 비롯한 인권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이고 주도면밀한 행정 감시와 의정 감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인권제도의 구축과 실행은 주민 전체의 인권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주화를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지역 인권제도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고민하는 인권보장체계의 방향

채 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 들어가며

2007년 경남 진주의 조례제정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제도화(또는 인권의 지역화)가 추진되었다. 결정적으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며 인권제도화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별로 인권제도화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인권제도화와 다른 범주지만 지역인권보장체계를 함께 구성해야 하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여성문제 지원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장애인·어린이·청소년·노인·이주민·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지원 기관들의 확대도 이뤄졌다.

지역별 인권운동은 인권제도화의 추진 과정의 상이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인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속도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내실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각 지역의 인권운동은 많은 비판적인 질문을 있다.³⁾ 현재 인권의 제도 또는 관련분야의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전반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인권시민사회운동 역시 미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는 끊임없이 혐오·차별세력의 공세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전북지역의 인권제도화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인권보장체계의 방향을 고민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3) 이와 관련되어서는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진행된 <인권활동가네트워크회의> 자료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 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를 참조.

2. 전라북도 내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들

최근 몇 년간 전라북도 인권제도화 역시 양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북도인권조례)」가 올해 기준으로 제정 10주년이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전주, 익산, 군산에도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제도화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전북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어느덧 1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자체 내부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인권 정책과 사무가 시행되는 등 내용적으로도 확대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

[전라북도, 각 시·군 인권조례 내용]

지 역	제정	발의 형태	최근 개정	전담 부서	인권위원회			기본 계획	실태 조사	인권 교육	옴부 즈맨	기타
					위원수	심의 자문	정책 권고					
전북	2010. 7. 9	의원	2016. 6. 17	●	15명 이내	●	X	●	●	●	●	인권 담당관
전주시	2015. 5. 11	의원	2018. 8. 16	●	15명 이내	●	●	●	●	●	●	인권 담당관
군산시	2013. 10. 1	의원	-	X	9명 이내	●	X	●	●	●	X	
익산시	2016. 11.30	의원	-	X	15명 이내	●	●	●	●	●	X	

<2019년 기준 전라북도 각 시·군 인권조례 내용4>

그러나 확대된 인권제도화 속에서 내실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지점도 있다. 단적으로 작년 4월에 있었던 익산 시장의 다문화 구성원 차별 발언이었다. 당시 익산 지역 다문화 주민행사에서 익산 시장이 공개적으로 다문화 주민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한 것이 6월경에 알려지며 지역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차별 시정 요구를 넘어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탄에 나섰다. 또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주민들과 다문화 단체들이 익산시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서도 다문화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6년에 익산시 인권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에 대한 현실을 드러낸 계기이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제도화의 양적 확대 또한 중지된 상황이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북의 기초지자체는 조례조차 없으며, 행정의 인식과 필요성의 체감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전북 평화와인권연대가 2018년 6월에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인권조례 제정 등을 비롯한 인권제도화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44명의

4) 출처 : 전주시 인권담당관 주최 <2019년 세계인권선언 인권주간 기념행사> 토론회 자료

후보들 중 18명의 후보만이 질의에 답변하여 인권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혐오·차별세력의 공격 역시 인권제도화의 확대를 멈추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장수군의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이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발로 중단된 사례, 2017년 보수기독교계의 반발로 인해 후퇴된 전라북도 인권조례 시행규칙 등이 대표 사례다.

이렇듯 내실 있는 확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의 인권위원회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적이지 않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위원 위촉되며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3. 전라북도 인권위원 위촉 문제를 통해 본 인권보장체계의 한계

작년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의 A임원이 2017년에 위촉된 제2기 전라북도 인권위원임을 파악하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진행했다. A위원이 쿼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선동의 주체인 전북기총의 임원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A위원 스스로도 적극적인 혐오선동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위원은 2015년 6월의 한 행사에서 “국민 건강과 정서를 깨트리고 시민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는 쿼어축제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낭독하고, 2018년엔 대외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체복무제가 들어가 있어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는 한국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다”는 발언을 했던 전력도 있었다.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2기 전라북도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나가던 작년 5월경에 뒤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한 뒤에 해당위원에 대한 규탄 및 재위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그 이후 A위원이 연임을 거부하며 재위촉 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9년 7월에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2명의 위촉직 위원 중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B가 위원으로 위촉된 점이다. 광역지자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맡고 있고,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을 받는 기관의 임원을 인권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위촉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재차 인권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전북도는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 B위원이 과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회(이하 지장협 전북지회)의 임원으로 재임 중이던 기간에 발생했던 문제가 드러났다. 지장협 전북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201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이하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16명의 허위조사원을 동원해 조사수당 5,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부당 수령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전액 환수 조치가 진행되었다.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 B위원은 지장협 전북지

회장을 맡고 있었기에 보조금 부당 수령과 무관할 수 없었다. 더구나 당시 B위원의 측근 중 한명이 보조금 5,500여만원중 일부 금액인 1,400만원을 B에게 전달했으나, B위원이 이를 부정하여 측근과 직원들이 1,400만원을 변상했다고 호소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B위원이 장애 분야의 몫으로 전라북도 인권위원을 위촉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 진보적 장애인계를 비롯해 인권시민사회에서 B위원의 사퇴 촉구와 전 북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었다. 결국 해당 B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전라북도는 사퇴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하였다. 당시 문제제기를 함께한 인권시민사회는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과 상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의 부적절한 태도와 인권위원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고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할 것을 인권조례 표준안으로 명시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이러한 권고와는 무관하게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인권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했다. 전라북도의 비개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와 방식이 이와 같은 논란과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과 평가가 있었다. 전라북도는 제4기 인권위원 위촉부터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제2기와 제3기의 무자격 인권위원 위촉 과정의 문제점 공개 및 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4. 지역인권보장체계, 어떻게 가야할까.

많은 문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시민사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체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조례 제정 등 인권제도화를 비롯한 인권보장체계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로 인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존재, 차별과 혐오의 위협을 받는 존재는 먼 곳이 아닌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권침해와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인권 보장체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지자체의 행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피해자 상담을 통해 2018년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고, 이후 피해자 측의 소송 제기를 통해 올해 4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된 ‘고창군수 부인 갑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자 측은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관계망에서 고립되어 지지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인권상담과 지원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지역사회는 인구유출 규모는 큰 반면 유입이 적으며 오랜 역사와 경험에 기초한 전통, 문화, 관습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는 새로운 인권 영역의 확장과 인권 보호체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런 특성으로 지역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공의 질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어 인권의 가치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관행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과 충돌하게 되어 인권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⁵⁾ 이렇듯 지역공동체 내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성격들을 극복하고 인권보장이 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 및 운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제도화의 내실 있는 확대와 함께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다양한 인권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⁶⁾

지역인권사무소가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호소통을 통한 참여를 만들어내고, 인권보장을 위한 협력체계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및 인권부서, 관련 기관, 법률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집단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지역인권사무소가 자기 과제로 가져가야 하며 그럴 책임도 있다. 각 지역에서 인권제도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 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인권시민사회 역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참고 : 안효섭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2014)

6)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태섭의원실, 이재정의원실, 이철희의원실, 표창원의원실 공종주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자료집, 2019.

지역사회 인권보장 체계 현황과 과제

-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진 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1. 지역 사회 인권보장 체계에 대하여

가. 국가인권위원회

- 지역인권사무소

나. 인권조례

- 광역/기초
- 인권기구 - 인권위원회
 - 인권센터
- 행정 전담 부서
- 정책 - 인권기본계획
 - 인권증진시책
 - 인권영향평가
- 교육 - 공무원
 - 주민
- 학생인권조례

다. 시민사회

- 인권단체
- 시민사회단체
- 주민 조직

라. 민관협력

마. 시민사회연대

2. 충남 사례⁷⁾

가. 인권위/인권사무소와의 협력

- 부분적으로 진행

나. 인권조례

- 기초자치단체인 15개 시군 모두 제정되어 있으나 운영은 미비⁸⁾
- 인권위원회 활동은 단체장에 따라, 위원 변경에 따라 부침이 있음
- 인권센터의 독립성 문제, 민감한 사항 권고 수용 문제⁹⁾
- 인권행정 전담 부서가 아닌 '팀' 수준
- 인권기본계획은 수립에 그치는 정도
- 인권증진시책 선정, 점검의 모호함, 행정 무관심
-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의 부재, 행정 무관심
- 무계획의 공무원 인권교육, 주민 교육은 기초지자체에 위임, 점검 없음
-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재 실행 준비 단계

다. 시민사회

- 인권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단체가 매우 부족함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의 어려움
-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분투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함
- 충남도가 주민 중 '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함. 3기.

라. 민관협력

-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가 부족함
- 단체장 관심 사항이 아닌 경우 행정의 요구도 없음
-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집행과정 점검 필요
- 조례에 따른 보조금 사업 진행 중

마. 시민사회연대

- 폐기물, 도시공원 등 지역 사안에 따라 연대
-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연대
- 대전, 충남북 인권활동가 연대

7) 참고1. 충남인권위/ 시민사회 활동 공유 자료 참조

8) 참고2. 충남인권위 결정문 요약 참조

9)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결정과 인사위 징계결정이 소청제로 인해 무력화

3. 과제

가. 지역 인권역량의 강화

- 활동가 발굴, 교육 훈련과 행정 지원 체계 마련
- 공무원, 주민, 학생 인권교육 모니터링
- 인권영향평가, 인권시책토론회 등 시민 참여
- 인권단체의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 추진

나. 연대 강화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공감대 형성
- 광역 - 기초 시민사회단체 연대
- 중부권을 넘어서는 전국적 연대

<참고 1> 충남인권위 / 충남시민사회 활동 공유

1. 충남 인권위원회¹⁰⁾

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

- 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 ② 종교계 협의 및 연대
- ③ 전국 연대(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 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 ④ 주요 정당, 정치인과의 협력 강화
- ⑤ 인권위 주관 기자회견, 토론회 등 행정 지원 없는 독자적인 활동 추진

나. 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하여

- ①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위원회 입장 발표¹¹⁾
- ②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활동
 - ▲ 교육문화소위원회 : 인권교육 모니터링, 인권선언기념일 행사 기획 등
 - ▲ 정책제도소위원회 : 인권시책토론회, 인권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 ▲ 노동소위원회 : 노동자의 생명, 안전, 기본권 보장 연구 및 대안 제시¹²⁾

10) 참고3. '충남인권위 활동경과' 참조.

11) (주)갑을오토텍의 원만한 해결 촉구 성명, 태안화력발전 사고 희생자 김용균님 인권위 합동 조문,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에 따른 입장문, 서산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입장문 등.

12) 참고4. '충남인권위 노동소위 보고서 요약' 참조.

▲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 자문

▲ 장애인이동권소위원회 : 인권실태조사(장애인이동권) 후 개선 대안 연구 등

③ 위원회 워크숍

④ 위원회 주관 세미나¹³⁾

⑤ 권고 및 의견표명¹⁴⁾

2. 충남시민사회단체

가. 충남인권조례지킴이 공동행동

- 집회, 기자회견 등

나. 시민 공론화

① 충남 인권 포럼¹⁵⁾

② 시민이 만드는 충남인권조례 집담회¹⁶⁾

③ 천안시 인권교육 결과보고회¹⁷⁾

④ 코로나19 충남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담회

다. 민관협력(인권증진 공모사업)

- 시민교육 등

라. 도민인권지킴이단 참여

- 기자회견, 토론회, 지역연대 등

마.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 기자회견, 토론회, 천막 농성 등¹⁸⁾

13) 2019.10.11. ‘충남도민의 인권,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민인권선언 5주년 및 충남인권기본조례 제정1년 기념 세미나.

14) 2020.4.9. ‘충남 15개 시·군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5) 2017.10.13. ‘인권조례가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평. 대전인권사무소.

16) 2018.7. 시민이 만드는 충남인권조례 “시민에게 묻고, 시민이 답하다”.

17) 2020.1.11. ‘인권도시를 향한 출발’ 천안시인권 교육 결과 보고회.

18) 2020.6.22.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도의회 교육위 수정안 깊은 유감’ 천막농성”. 디트뉴스.

<https://www.dtn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078>

<참고 2> 충남인권위 결정문 요약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관할 15개 시·군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인권행정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충청남도지사는 관할 15개 시·군의 장에게 해당 시·군의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장은 충청남도지사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바랍니다.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인권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및 지역의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참고 3> 충남인권위 활동 경과¹⁹⁾

<제1기 인권위원회>

■ 임기 : 2013. 5. 16. ~ 2016. 5. 15.

■ 구성 : 위촉직 13명 + 당연직 2명(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 운영 : 총 21회 회의(연간 7회), 안건처리 82건(회당 4건)

■ 주요 성과

○ 충청남도의 인권규범과 정책 등 제도적인 기틀마련에 앞장

- (규범) 도민인권선언 제정(14.10월), 인권조례 전부개정(15.10월)
- (제도) 인권위원회 설치(13.5월), 인권전담부서 「팀」설치(15.1월)
- (정책) 인권정책 기본계획(14.12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5~16년)

○ 타 시도와의 연대 및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 충남도↔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방안 논의(15.3월)
- 2015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 : 도지사 기조발제, 우주형 위원장 분과발표
- 제2회 한국인권회의 발표·토론 참여(16.3.24~3.25, 덕산리솜)

19) 2020. 3. 5. 충남인권위원 내부 토론용으로 위원장이 작성한 자료임.

○ 각종 지역인권현안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

- 도지사 인권토크 심포지엄(14.12월), 1주년기념 인권심포지엄(15.10월)
- 인권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참여(4명/15.3~8월)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문위원 참여(3명/15.7~12월)
- ➔ 인권의 불모지인 충남에서 인권가치 확산 분위기 조성

<제2기 인권위원회>

■ 임기 : 2016. 7. 20. ~ 2019. 7. 19.

■ 구성 : 위촉직 19명 + 당연직 1명(자치행정국장)

■ 운영 : 총 24회 회의(연간 8회)

■ 주요 성과 : 인권센터 운영, 인권증진시책,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 등 자문, 인권조례 폐지 대응, 노동소위 구성·운영

2016. 7. 20. 제1차 인권위원회

2016. 8. 3. 제2차 인권위원회(워크숍)

2016. 8. 9. 갑을오토텍 앞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2016. 9. 7. 제3차 인권위원회

2016. 11. 30. 제4차 인권위원회

2016. 12. 5.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위협의회 발족

2016. 12. 29.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

2017. 1. 11. 제5차 인권위원회(워크숍)

2017. 1. 24. 인권위원회, 갑을오토텍 **현장 방문**

2017. 2. 17.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방안 토론회

제6차 인권위원회(도지사에 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결의)

인권위원회 제1차 교육문화소위원회

2017. 2. 20. 인권위원회 **의견 표명**(도민인권조례 시행규칙 관련 의견서)

2017. 2. 28. 인권위원회 - 기독교총연합 간담회(인권조례 시행규칙 관련)

2017. 3. 21. 제7차 인권위원회(워크숍)

2017. 3. 27. 인권위원회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2017. 4. 5. 인권위원회 제2차 교육문화소위원회

2017. 4. 9. 도민인권조례 폐지 청구

2017. 4. 28.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발족

2017. 5. 11. 충남인권위 **성명 발표**(보도자료 배포)

2017. 5. 16. 제8차 인권위원회

2017. 5. 18.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2017. 6. 8.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2017. 6. 10. 원불교 의견 표명
 2017. 6. 13. 조계종 의견 표명
 2017. 6. 19. 도민 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2017. 6. 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견 표명
 2017. 6. 29.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2차 회의
 2017. 7. 3.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제1호 성명 발표(충남인권조례)
 2017. 7. 7.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의견 표명
 2017. 7. 14. 국가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 표명
 2017. 8. 21. 인권위원회 제3차 교육문화소위원회
 2017. 8. 29. 제10차 인권위원회
 2017. 9. 14.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3차 회의
 2017. 10. 16.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4차 회의
 2017. 10. 30. 제11차 인권위원회
 2017. 11. 17. 인권위원회 제4차 교육문화소위원회
 인권조례폐지 청구인 명부 접수
 2017. 12. 7.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5차 회의
 2017. 12. 14. 인권위원회와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2017. 12. 20. 국가인권위원회 - 충청남도 업무협약
 2018. 1. 8. 충청남도 인권주간 문화행사 TF 1차 회의
 2018. 1. 22. 제13차 인권위원회
 2018. 1. 30. 인권위원회 **논평 발표** (도의회 행자위 가결)
 2018. 1. 31.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충남도지사 면담
 2018. 2. 2.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인권위원회 **논평 발표**
 2018. 2. 26. 충남도지사, 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2018. 2. 27. **충남인권위 - 전국협의회 토론회 개최**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입장문 발표(충남인권조례)
 2018. 3. 5. 인권위원회 **논평 발표** (조례규칙심의회 각하결정)
 2018. 3. 7. 제15차 인권위원회(긴급)
 2018. 4. 3.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2018. 4. 4.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성명 발표(충남인권조례)
 2018. 4. 6. 제16차 인권위원회
 2018. 4. 12. 충남인권위 -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공동 **성명 발표**
 2018. 5. 8. 인권위원회 **논평 발표**(조례 폐지 관련)
 2018. 5. 10.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

2018. 10. 1. 충남인권기본조례 제정
 2018. 10. 10. 제17차 인권위원회
 2018. 10. 18.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 6차 회의
 2018. 11. 30. 제19차 인권위원회
 2018. 12. 6.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 7차 회의
 2018. 12. 7. 충남도 - 충남인권위 공동주관 충남인권워크숍 개최
 2018. 12. 13. 인권증진시책토론회
 2018. 12. 30. 인권위원회 동정 **보도자료 배포**(김용균님)
 2019. 1. 9. 제20차 인권위원회
 2019. 1. 22. 제21차 인권위원회
 2019. 2. 1.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²⁰⁾ 제안
 2019. 2. 12. 제22차 인권위원회
 2019. 2. 14.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체 1차 회의
 2019. 2. 19. 인권위원회 제1차 **노동소위원회**
 2019. 2. 21. 국가인권위원장 - 충남인권위 면담
 2019. 3. 18. 인권위원회 제2차 노동소위원회
 2019. 4. 11. 제23차 인권위원회
 제2차 인권기본계획 착수보고
 2019. 4. 24. 인권위원회 제3차 노동소위원회
 2019. 5. 22.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 8차 회의
 2019. 7. 19. 제24차 인권위원회

<제3기 인권위원회>

■ 임기 : 2019. 8. 8. ~ 2021. 8. 7.
 ■ 구성 : 위촉직 19명 + 당연직 1명(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 운영 :
 2019. 8. 8. 제3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2019. 8. 27. 인권보호관 위촉
 2019. 9. 26. 제2차 회의(인권위원회 워크숍)
 2019. 9. 30.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 9차 회의
 2019. 10. 11. 충남도의원(안장현, 이선영) - 충남인권위 토론회²¹⁾
 2019. 10. 30. 제3차 회의,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
 2019. 10. 31. 인권위원회 **입장 발표**(공청회 무산 관련)

20) 충남도, 아산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인권위원회, 충남노동정책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종교단체, 충남도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노사민정사무국 등

21) 도민인권선언 5주년, 인권기본조례 제정1년 기념 세미나 “도민의 인권, 안녕하십니까?”(비예산)

2019. 11. 20.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
2019. 11. 27. 제4차 회의(인권기본계획 최종보고)
2019. 12. 2. 도민인권선언 기념행사
2019. 12. 5. 전국광역시자치체인권위협의회 10차 회의
2019. 12. 6. 장애인이동권실태조사(인권센터) 최종보고
2019. 12. 11. 충청권인권위원회 - 대전인권사무소 워크숍
2020. 1. 9. 국가인권위 - 광역인권협의회 공동컨퍼런스 충남도 협의
2020. 2. 18. 인권위원회 제1차 **장애인이동권 소위원회**
2020. 2. 20. **인권위원회로 도민의 첫 번째 문서 접수**(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
2020. 2. 28. 인권위원장 입장문 발표(서산 산업폐기물 관련)

<참고 4> 충남인권위 노동소위 보고서 요약

1

개 요

- ☐ 구 성 : 이진숙(소위원장), 유요열, 정현우, 황영란.
- ☐ 활동근거 : 충남인권기본조례 제16조(운영),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 활동기간 : 2019. 2. 19. ~ 4. 24.
- ☐ 활동내용 : 총 3회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고 보고서 제출

2

활동 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태안화력 故 김용균님 사건을 비롯하여 도내 잦은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인권선언과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안전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이 인권보장에 기반하여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20차 인권위 회의에서 노동소위 구성.
-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정에 노동관련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정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에 기반한 의견수렴이 중요함.

☐ 추진방향

- 노동소위 활동 목적과 계획을 공유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충남도 노동정책 현황을 검토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노동단체 및 전문가 토론을 진행
- 노동소위 활동 보고를 통해 정책 제언 등 개선 대안 제시

1차 워크숍

자치정부의 노동인권 보장,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장소 : 2019. 2. 19. 10:00~12:00, 문예회관 107호.
- 참석 : 15명(도 인권위원, 도의원,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 흐름 : 인사 → 발표(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장) → 토론(참석자)
- 주요내용 : 서울시 노동정책 소개 및 토론

2차 워크숍

충남 노동정책, 어떻게 하고 있나

- 일시·장소 : 2019. 3. 13. 14:00~16:00, 문예회관 107호.
- 참석 : 19명(도 인권위원, 도의원,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 흐름 : 인사 → 발표(도 노사협력팀, 이원복) → 토론(참석자)
- 주요내용 : 충남도 노동정책 공유 및 토론

3차 워크숍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 일시·장소 : 2019. 4. 24. 14:00~16:00,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
- 참석 : 18명(도 인권위원, 도의원, 현장활동가, 공무원 등)
- 흐름 : 인사 → 발표(현장활동가, 전문가 7인) → 토론(참석자)
- 주요내용 : 도 노동정책, 작업환경과 산재예방, 노동자 정신건강, 비정규노동자 지원,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

1

노동 정책 기획, 집행, 평가의 시민참여 확대

- 도민 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이 도민과의 소통과 충분한 참여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노사민정협의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으며, 정책자문기구는 ‘노동정책협의회’ 뿐임.
- ‘차별없는 노동’을 위한 충남도지사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토론회, 충남 노동정책 이행 노동자 평가단 구성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평가/전문가평가/시민(당사자 또는 시민단체)평가처럼 평가체제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넓히기 위해, ‘직장갑질 119’ 등을 본따 ‘(가칭)충남 노동정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의 오픈 카톡방 개설 등 다양한 소통 채널 개설 필요함.

2 기본계획, 목표, 과제, 분야, 단위과제 정합성 제고

- 정책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내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생명권,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 상황에 있음에도 정책과제에 ‘산재예방, 노동안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6년에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을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으로 제시하고, ‘노동현장 안전체계 구축, 휴식권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안전 관리 도입’을 추진하였음.
- 정책과제와 성과지표에 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래 서울 예시와 같이 ‘충남노동인권기준’ 마련이 요청됨.

3 공무원의 노동인지감수성 증진과 전담 조직/예산 확충

-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하여야 하며, 노동정책은 일자리노동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함.
-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의 기업 유치에서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노동인권 복지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행정 조직의 규모와 예산은 그에 미치고 있지 못하므로 조직과 예산 확충이 필요함.
-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이 협소하거나 인권보장 관점에서 부족함.

4 ‘모범사용자 역할’은 물론 ‘모두를 위한 노동인권’ 추진

- 생활임금제와 관련 예산 편성의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문제 등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
- 공공부문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과 권리침해를 겪는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에 대해 교육, 상담, 권리구제, 복지 확대 등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노동청과의 협력사업, 민간 기업 사용자의 노동권 인식 개선, 시민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함.

울산 인권옹호관제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위원제도 도입

윤 경 일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연구원)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가 200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총 177곳(72.5%)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19년 현재 총 76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59곳)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높아져 지난 2017년 제31차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과 인권도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7년 12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발족하며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9월 중순에 새롭게 임명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를 더욱 높여낼 수 있도록 「인권기본법」의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포부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울산지역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11.8.),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10.11.),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19.)을 제정하여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에서 모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은 제도마련이후 인권행정을 본격화하기위한 시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뒤쳐지지는 않도록 기본적인 태세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인권전담기구의 구성

201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서도 2011년 복구를 시작으로 5개 구·군과 울산시 등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관련 전담부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권전담부서로서 인권담당관실, 인권팀,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옹호관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 보수적인 단체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부터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권전담팀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와 같이 인권침해사안까지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도시는 경북, 세종시 등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에 <인권공동체>팀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공동체> 부서의 업무편람을 확인하면 인권에 대한 직접적 업무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부서의 설치에 앞서 인권전담부서로서의 무엇을 주요한 업무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타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전담부서의 경우 대부분 그 고유사업으로 인권정책 개발과 시행, 인권기본계획의 시행과 점검,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원회 운영 등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인권전담부서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타 시도와 같이 인권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부서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게 마련한 인권전담부서가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설치현황 - 2019년

1	서울	18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4)	인권정책팀(4)	인권보호팀(3)	인권협력팀(4)	시민인권보호관(3)
2	광주	15명	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1)	인권옴부즈맨(1)	인권정책담당(6) 여성인권보호관(1)	인권평화교류(4)	옴부즈맨지원(2)
3	대구	5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3)	감사관실 인권옴부즈맨(1)	옴부즈맨지원(1)	
4	제주	4명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시민참여인권(4)			
5	대전	3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담당(2)	시민인권보호관(1)		
6	강원	3명	총무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3)			
7	경기	6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3)	인권센터(3)		
8	충북	4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3)	인권보호관(1)		
9	충남	6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3)	인권센터(3)		
10	전북	9명	인권센터	인권교육팀장(4)	인권보호팀장(2)	장애인인권팀장(3)		
11	전남	3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인권팀장(2)	인권옴부즈맨(1)		
12	부산	10명	행정자치국	인권노동정책과				
13	인천	3명	혁신담당관실	시민인권담당(3)				
14	울산	3명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	인권공동체(4)			
15	경남	3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보호담당(3)			
16	경북		미설치					
17	세종		미설치					

표2.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설치현황 - 2019년

1	서울	성북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2	서울	은평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3	서울	영등포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3)	
4	서울	서대문구	3명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인권팀(3)
5	서울	동작구	2명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2)	
6	서울	노원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3)	

7	서울	도봉구	4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4)	
8	서울	구로구	4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4)	
9	서울	강북구	3명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3)	
10	서울	성동구	4명	감사담당관	인권팀(4)	
11	광주	동구	2명	자치행정국	인권청년과(2)	
12	광주	남구	3명	감사담당관	인권민원팀(3)	
13	광주	북구	5명	자치행정국	인권교육과	인권정책팀(5)
14	광주	서구	3명	총무국	총무과	인권단체(3)
15	광주	광산구	3명	감사관	인권팀(3)	
16	경기도	수원시	7명	감사관	인권팀(3)	인권센터(4)
17	경기도	광명시	2명	감사실	시민인권팀(2)	
18	경기도	고양시	7명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평화인권도시팀(7)
19	경기도	성남시	4명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4)
20	전라북도	전주시	5명	감사담당관	인권센터(5)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명	감사실	인권센터	

3. 인권침해구제 제도의 도입과 운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곧바로 해당 사업부서나 관리부서로, 혹은 감사담당부서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 민원에 대한 처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국제조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판단기준 없이 일반 민원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해 상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 권한을 가지고,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빠른 시정조치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시 소속기관과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직접

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7인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인권침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인권옴부즈맨)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 충남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및 구제 전담기구로서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요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권침해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사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 상임 3명 (계약직 공무원)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 상임 1명(계약직 공무원), 비상임 6명, 7인합의제

강원도 인권보호관 - 상임 1명, 시민인권보호관 6명

전라남도 인권보호관 - 상임 1명

충청남도 인권옹호관 - 상임 1명

대구광역시 인권보호관 - 상임 1명

경기도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 상임 3명(일반임기제1명, 시간선택제 2명)

경기도 광명시 시민인권옹호관 - 상임 1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북구 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4. 울산 인권침해구제 제도 도입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울산역시 인권관련 제도의 도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울산에서 논란이되었던 소위 3대 조례사태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조례는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입니다. 현재는 3대 조례에 대한 혐오세력과 보수야당의 거센 저항은 결국 발의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들 조례는 일반적으로 혐오세력들의 표적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등은 국가정책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며, 「청소년의회조례」의 경우 역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이고,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대구광역시에서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보수기독교계와 보수야당은 소위 3대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허용’, ‘좌파이념교육 주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게 된다는 등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혐오를 부추기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공개토론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아 나섰으며,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안으로 논의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본회의장에 난

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마저 감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집단반 발은 발의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5월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발의, 11월 울산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통해 조직적 행동을 보여 오던 이들의 공동행동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시기에는 처음으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모든 정치적 사안을 동성애 찬반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집단적 도발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인권’, ‘민주’, ‘청소년’ 등이 들어가는 진보적 제도 및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혐오세력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인권제도의 도입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같은 ‘인권침해구제 제도’의 도입은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집행부 내에서 반대기류가 강화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된 ‘미래비전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활용한 인권침해구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권익위원회법에 의해 구성되어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합의제행정기구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첫째, 인권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독립적인 인권구제 기구의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조례개정은 불필요한 정치쟁점을 가속화 시킬뿐 실효적이지 않다.

둘째,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 체계에서 최소한 인권행정에 대한 관심과 추진을 고려하고 상황을 활용하여 보다 진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기존의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인권구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이 안을 제시하고 전체 의견을 모아냈습니다. 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기에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년여동안의 협의를 통해 모아진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고충분과(상임 4인)와 인권분과(상임2, 비상임4)으로 나눈다.
- ② 인권분과위원은 상임2명과 비상임4명으로 구성하여 인권관련 진정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독자적,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인권구제기구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권옴부즈만을 독립시켜 독자적인 구조로 만들어간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여전히 제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문제

법무통계담당관실을 통해 조례개정에 검토작업에서 여전히 인권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철지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관련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 법해석은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습니다.

둘째, 인권구제업무를 권익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시민신문고위원회’로 두는 것은 인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인권업무 전반이 시민신문고위원회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인권과 관련한 행정을 권익위원회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민신문고위원회’ 아래로 두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2020년 8월 21일 현재, 시민신문고조례는 입법예고까지 경과했지만, 내부의 이견이 발생하여 보류된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면담을 통해 다음 회기에 반드시 발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시정 감사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신청인”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7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제8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이유로 상담신청이나 진정 등을 한 피해자 본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 및 단체

7. “인권침해”란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8.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2장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정을 감사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고충민원, 청렴계약감시평가 활동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하 “고충위원”이라 한다) 4명,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청렴계약감시평가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 인권위원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⑤ 상임인권위원 2명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 중 4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의 2(분과위원회)

④ 인권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2. 인권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인권업무에 관한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의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처리(전체 신설)

제21조의 2(신청)

제21조의 3(조사)

제21조의 4(조사의 중지)

제21조의 5(신청의 기각)

제21조의 6(조사결과 조치)

제21조의 7(준용)

제21조의 8(홍보)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일본 가와사키 사례>

- 시민옴부즈만조례, 인권옴부즈만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이를 지원할 체계를 단일화하여 사무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3년에 「가와사키시 종합계획·가와사키시 신시대2010플랜」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권시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개별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 2000년 6월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가 제정되고, 2002년 5월부터 상담·구제 등을 시행하여, 제도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구로구 옴부즈맨 [제목개정 2014. 4. 10.]

제3조(구로구 옴부즈맨의 구성 등) ① 구로구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10., 2018. 11. 1.>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7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처리

제23조(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3.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4. 그 밖에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④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